

高麗・朝鮮朝 『貞觀政要』의 刊行에 관한 研究*

Study on the Publication of *Jeongkwanjeongyo* in Goryeo and Joseon Dynasty

엄 태 용 (Eom, Tae Yong)**

◁ 목 차 ▷

- | | |
|--------------------|-----------|
| 1. 序 論 | 3. 現存本 분석 |
| 2. 「貞觀政要」 관련 기록 검토 | 3.1 舊本 |
| 2.1 高麗時代 | 3.2 戈直本 |
| 2.2 朝鮮時代 | 4. 結 論 |
| | <참고문헌> |

<초 록>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帝王學 文獻으로서 폭넓게 강독되었던 『貞觀政要』의 간행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현존본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와 조선의 『貞觀政要』와 관련된 文獻 기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였다. 특히 기왕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承政院日記』의 내용을 제시하여 英祖代 『貞觀政要』의 간행에 관한 상세한 사실을 파악하였다. 둘째, 『貞觀政要』의 판본을 전수적으로 조사하고 목록화 하였으며 각 판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貞觀政要』의 판본을 총 6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 중 高麗 木板本, 乙亥字本 『貞觀政要註解』 卷5의 경우, 戈直이 언급한 舊本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여 이 두 판본이 戈直本 편찬 이전의 舊本에 가깝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舊本은 현재 대부분 소실된, 吳兢 편집의 原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미진하게 검토되었던 肅宗代 판본과 英祖代 판본에 대해서도 상세히 검토하였다.

要語: 貞觀政要, 貞觀政要註解, 吳兢, 戈直, 唐 太宗, 帝王學

<ABSTRACT>

This study has examined the publication of *Jeongkwanjeongyo* (貞觀政要) which was widely adopted as a textbook for the disciplines of kingship in East Asian kingdom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analysed several records about *Jeongkwanjeongyo* in Goryeo and Joseon Dynasty. Secondly, this study investigated all the book of *Jeongkwanjeongyo* owned in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In result, this study classified book of *Jeongkwanjeongyo* into six editions. Of that, Goryeomokpanbon (高麗 木板本) and *Jeongkwanjeongyojoohae* (貞觀政要註解) were sorted into the old edition of *Jeongkwanjeongyo* before the publication of Gwajikbon (戈直本). Editions published in Sukjong and Youngjo period were also analysed in detail.

Key words: *Jeongkwanjeongyo*, *Jeongkwanjeongyojoohae*, Wu Jing, Ge Zhi, Tang Taizong, Disciplines of kingship

* 본 논문은 성균관대학교 정보관리연구소 주관 2018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고를 토대로 일부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여 보완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 졸업(zndyd@naver.com)

투고일: 2019년 8월 20일 최초심사일: 2019년 8월 26일 게재확정일: 2019년 9월 14일
서지학연구, 제79집, 167-199,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9.167>

1. 序 論

文景之治, 貞觀之治, 康乾盛世. 오랜 중국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융성했던 시기를 표현하는 단어들이다. 그 중에서도 唐太宗李世民(599-649)의 재위 기간인 貞觀¹⁾ 23년간의 貞觀之治는 신화적 이상 시대인 三代(夏, 殷, 周) 이후 가장 성대한 治世를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아 후대의 帝王이라 하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정치로 칭송되었다. 太宗 시대의 唐은 唐律을 제정하고 유교정치를 강화하여 국내를 안정시키는 한편 突厥 등 사방의 이민족을 정벌하여 영토를 크게 넓혀 명실상부 세계의 중심 국가로 군림하였다.

『貞觀政要』는 史官 吳兢이 貞觀 연간의 조정의 시행, 君臣 간의 問答, 忠臣과 賢臣의 諫言을 부류별로 편집하여 총 10卷으로 만든 것²⁾으로 唐 開元 연간에 玄宗에게 진상되었다.³⁾ 『貞觀政要』는 그 편찬 이후 중국의 역대 왕조 및 고려, 조선의 經筵 자리에 거의 빠짐없이 포함되는 帝王들의 필독서였다. 이는 唐太宗 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중요 사료일 뿐 아니라 唐 이후 중국과 조선의 왕조에서 지속적으로 편찬된 일련의 記言體 史書의 체제·내용적 典範으로서 기능하였으므로 文獻系統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⁴⁾

『貞觀政要』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문화연구회⁵⁾는 『貞觀政要』의 본문과 戈直의 集論을 完譯하였으며 대표 저자 이충구가 권두에서 『貞觀政要』의 구성과 체제 등에 관한 개괄적인 해제를 덧붙였다. 윤대수⁶⁾는 『貞觀政要』에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唐太宗의 통치술에 대하여 조명하였다. 구순옥과 신창호⁷⁾는 『大學衍義』와 『貞觀政要』를 대상으로 전통시대 帝王學 교재로서의 역사적 편찬 의의를 고찰하였다. 김소희⁸⁾는 조선 후기 壬辰字로 인쇄된 여러 교정쇄본을 연구하면서, 그 대상 중 하나로 『貞觀政要』의 교정본(청구기호: K2-33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을 선정하여 교정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임기영⁹⁾은 중국과 조선의 『貞觀政要』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특히 조선 전기의 乙亥字本 『貞觀政要註解』 권5의 가치에 주목하였다.

이 중 김소희(2015)와 임기영(2018)이 서지학적 분석을 담고 있는데, 김소희(2015)는 단지 한 개 판본의 교정 방법에 대해서만 주목한 연구이며, 임기영(2018)의 경우 고려와 조선시대 판본에 관해

1) 唐의 연호. 627-649년.

2) 『貞觀政要集論』〈貞觀政要集論題辭(吳澄)〉.

“史臣吳兢, 類輯朝廷之設施, 君臣之問對, 忠賢之諍議, 萃成十卷, 曰貞觀政要.”

3) 『貞觀政要』의 편찬시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임기영, “乙亥字版 『貞觀政要註解』 권5의 의의와 가치,” 『서지학연구』 75집(2018. 9), 8-9. 참조.

4) 엄태용·신승운, “『國朝寶鑑』의 編纂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77집(2019. 3), 290-300.

5) 이충구 외 譯, 『(譯註)貞觀政要集論』(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5).

6) 윤대수, “당태종의 통치술: 정관정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7) 구순옥·신창호, “帝王學 교본 편찬의 역사적 고찰 - 『貞觀政要』와 『大學衍義』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8집(2016. 9).

8) 김소희, “조선후기 금속활자본 교정사례연구 - 壬辰字 校正刷本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61집(2015. 3).

9) 임기영, “乙亥字版 『貞觀政要註解』 권5의 의의와 가치,” 『서지학연구』 75집(2018. 9).

기술한 내용이 소략하고 실제 현존본의 상황과 다소 어긋나 있다.¹⁰⁾ 따라서 기왕의 연구는 「貞觀政要」의 실제적 판본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貞觀政要」의 간행과 관련한 고려와 조선의 1차 사료를 재검토하고 둘째, 이를 토대로 「貞觀政要」의 현존본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각 기관의 소장본을 실사하여 각 개별 판본의 특징과 판본 간의 관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貞觀政要」 관련 기록 검토

이 장에서는 현존본 분석에 앞서 「貞觀政要」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문헌 기록을 고려와 조선시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高麗時代

고려 시기에 「貞觀政要」에 관한 내용이 처음 보이는 것은 光宗 元年(950) 1월의 일로, 큰 바람에 나무가 꺾여 왕이 재앙을 물리치는 법을 묻자 司天監에서 “덕을 닦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아뢰어 이 때로부터 「貞觀政要」를 읽었다는 기록이다.¹¹⁾ 이를 통해 이 시기 이전에 이미 「貞觀政要」가 수입되었고 군왕의 修身書로서 기능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成宗 元年(982)에는 崔承老가 時務 28條의 서두에서 吳兢이 唐 玄宗에게 「貞觀政要」를 올린 고사를 인용하여 祖宗의 정치를 본받아 힘써 행할 것을 건의하였다.¹²⁾ 睿宗 11년(1116)에는 왕이 「貞觀政要」의 구절을 인용하여 대신들에게 훈시하면서 金緣, 朴景仁과 寶文閣의 학사들에게 명하여 「貞觀政要」를 註解하여 바치도록 하였다.¹³⁾ 德宗 2년(1033)에 왕이 「貞觀政要」의 내용을 토대로 避馬에 대한 제도를 규정하였으며,¹⁴⁾ 忠惠王 (後)5년(1344)에는 贊成事 朴忠佐가 왕에게 「貞觀政要」를 강론하였다.¹⁵⁾ 고려 말엽

10) 英祖代와 肅宗代 판본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 그러한 예이다. 高麗 木板本과 관련한 내용은 특히 소략하다.

11) 「高麗史」〈世家〉卷第2 光宗 元年 1월.

“(庚戌)元年 春正月 大風拔木. 王問禳災之術. 司天奏曰, 莫如修德. 自是, 常讀貞觀政要.”

12) 「高麗史」〈列傳〉卷第6 諸臣: 崔承老.

“時王求言, 承老上書曰, 竊見開元史臣吳兢撰進貞觀政要, 欲勸玄宗勤修太宗之政. 盖以事體相近, 不出一家而其政休明, 可爲師範也.”

13) 「高麗史」〈世家〉卷第14 睿宗 11년 12월.

“甲申, 宴清燕閣, 謂學士等曰, 朕嘗覽貞觀政要. 太宗曰, 但使天下大平, 家給人足, 雖無祥瑞, 可比德於堯舜. 若百姓不足, 夷狄內侵, 縱有芝草鳳凰, 何異於桀紂? 斯言至矣, 庶幾景行. 遂命金緣朴景仁及寶文閣學士, 註解政要以進.” 이 주해본은 현전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尹誦의 墓誌銘 및 「高麗史」〈列傳〉卷第9 金仁存에도 관련 내용이 나와 있어 이 두 사람도 함께 주석 작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14) 「高麗史」〈志〉卷第38 刑法1 公式 避馬式.

에 이르러 恭讓王 2년(1390) 1월에 왕이 鄭夢周에게 명하여 『貞觀政要』의 序文을 강론하게 하였으나 尹紹宗이 二帝三王의 정치를 담고 있는 『大學衍義』를 읽을 것을 간하였다.¹⁶⁾ 同年 4월에는 講讀官 成石珣이 『貞觀政要』를 진강하면서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이는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¹⁷⁾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貞觀政要』의 편찬, 간행과 관련한 기록은 睿宗 11년의 주해를 명한 기사를 제외하면 보이지 않는다. 다만 『貞觀政要』가 고려 개국 초기부터 중국에서 유입된 후 독자적인 주석을 위한 왕명이 내려졌을 만큼 가치 있는 문헌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또한 일부 법령 제정의 근거로 활용되는 한편 帝王學의 필독서로 인식되어 여러 차례 왕에게 진강되었음을 볼 수 있다.

2.2 朝鮮時代

太祖 4년(1395)에 왕이 禮曹議郎 鄭渾, 校書少監 張志道에게 명하여 『貞觀政要』를 교정하여 올리게 하였다.¹⁸⁾ 端宗 시기에 들어와 『貞觀政要』의 주석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端宗 3년(1455) 2월에 舍人 趙孝門이 『貞觀政要』의 주석을 다는 것이 거의 마무리 되었으니 集賢殿의 諸儒들에게 명하여 편찬케 하라는 건의를 올렸다.¹⁹⁾ 同年(世祖 1년) 윤6월에는 世祖가 『貞觀政要註解』의 편찬을 원래 자신이 관장하였기에 이어서 攷定하겠다고 하였다가²⁰⁾ 거를이 없어 集賢殿 校理 洪應과 韓繼禧에게 명하여 편찬토록 하였다.²¹⁾ 이후 한동안 새로운 편찬 또는 간인에 대한 기사는 보이지 않으나 『貞觀政要』를 강독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지속적인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²²⁾

“德宗二年十二月，判，政要曰，三品以上六尚書九卿，遇親王，不合下馬。親王班，皆次三公下。”

15) 『高麗史節要』卷25 <忠惠王> 忠惠王(後) 5년 8월.

“贊成事朴忠佐，講貞觀政要。”

16) 『高麗史節要』卷34 <恭讓王1> 恭讓王 2년 1월.

“王欲覽貞觀政要，命夢周講其序。講讀官尹紹宗進曰，殿下中興，當以二帝三王爲法。唐太宗不足取也。請讀大學衍義，以闡帝王之理。王然之。”

17) 『高麗史』<世家> 卷第45 恭讓王 2년 윤4월.

“王御經筵，講讀官成石珣進講貞觀政要曰，太宗好聽直言，然臣下畏威，下能盡言。太宗深知之，必和顏而納之曰，群臣，盍爲我言之？蓋古之聖君，以天下之聰明，爲己聰明故，必採芻蕘之言。願上廣咨博訪，裁度而用之。”

18) 『太祖實錄』卷8 太祖 4년 9월 4일 乙未 1번째 기사.

“命禮曹議郎鄭渾及校書少監張志道，校正貞觀政要以進。”

19) 『端宗實錄』卷13 端宗 3년 2월 9일 乙酉 1번째 기사.

“舍人趙孝門將堂上意啓曰，今注貞觀政要及撰修文宗實錄垂訖，請俟事畢，令集賢殿諸儒撰定。從之。”

20) 『世祖實錄』卷1 世祖 1년 윤6월 12일 丙辰 10번째 기사.

“傳曰，貞觀政要註解及功臣戒鑑，文宗實錄修撰，予嘗掌之。若政要予當攷定。”

21) 『世祖實錄』卷1 世祖 1년 윤6월 19일 癸亥 6번째 기사.

“上召集賢殿校理洪應韓繼禧等謂曰，予嘗受上王命，註貞觀政要。昔唐太宗撰晉書，議者以爲撰述書史，非人主所務。今註政要，與唐宗異也。然庶務甚繁，不暇及也。爾等其畢註以進。”

22) 『成宗實錄』卷14 成宗 3년 1월 5일 壬寅 12번째 기사.

『成宗實錄』卷15 成宗 3년 2월 21일 戊子 8번째 기사.

肅宗 1년(1675)에 왕이 「貞觀政要」 1帙을 承政院에 내리면서 校書館으로 하여금 활자로 간인하게 하였다.²³⁾ 尹鑄의 문집인 「白湖全書」의 肅宗 2년(1676) 9월 기사에 「貞觀政要」 1질을 하사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고²⁴⁾ 같은 해 11월 13일의 「承政院日記」의 기사에 參贊官 丁昌燾가 “臣이 전에 頒賜받은 「貞觀政要」를 보니 …”²⁵⁾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어 이 시기에 간인한 판본을 여러 신하들에게 頒賜한 사실이 확인된다.

英祖 시기에 들어와 또 한 차례 「貞觀政要」의 간인이 이루어졌다. 英祖는 즉위 이후 「貞觀政要」에 대한 호감을 여러 차례 표시하였다. 英祖 4년(1728)에 비록 진강의 책은 아니나 淸燕의 한가한 때에 볼 만한 책임을 언급하였고,²⁶⁾ 同王 7년(1731)에 조선에서 「貞觀政要」를 진강한 경우가 있었는지를 물었다.²⁷⁾ 同王 9년(1733)에는 參贊官 洪景輔가 太宗을 멀리하고 成湯을 본받을 것을 건의하였으나 英祖는 진달한 말이 옳기는 하지만 「貞觀政要」의 내용 또한 좋다고 말하였다.²⁸⁾

이와 같은 英祖의 「貞觀政要」에 대한 선호에 따라 同王 10년(1734) 3월에 「禮記」의 강독에 이어서 「貞觀政要」를 강하는 것이 좋겠다는 하교를 내렸다.²⁹⁾ 4월에는 왕이 「貞觀政要」의 소요되는 工役에 대해서 문자 李宗誠이 「貞觀政要」 卷數가 많지는 않으니 간인하고자 한다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왕은 전에 金在魯가 「春秋左氏傳」을 강할 것을 청했지만 자신은 「貞觀政要」를 진강했으면 한다고 언급하였다.³⁰⁾ 6월에는 金若魯가 召對시에 사용할 책자로 「貞觀政要」를 건의하였다.³¹⁾ 얼마 후 李宗誠이 「名臣奏議」를 이어서 강독할 책으로 「貞觀政要」와 「綱目」을 아뢰자,

「成宗實錄」 卷111 成宗 10년 11월 4일 乙酉 4번째 기사.

23) 「肅宗實錄」 卷4 肅宗 1년 12월 18일 辛未 1번째 기사.

“上, 下貞觀政要一帙于政院, 仍教曰, 太宗之從諫弗咈, 聞過必改, 善始克終, 可觀於此. 予未嘗不再三拳拳也. 令校書館, 以活字刊進.”

24) 「白湖全書」 <年譜>.

“肅宗大王二年丙辰 … 九月宣賜貞觀政要一帙.”

25) 「承政院日記」 257冊(탈초본 13冊) 肅宗 2년 11월 13일 辛卯 13/14 기사.

“昌燾曰, … 臣頃得頒賜貞觀政要而見之.”

26) 「承政院日記」 663冊(탈초본 36冊) 英祖 4년 6월 5일 庚午[甲申] 40/41 기사.

“德鄰曰, 貞觀政要, 似有益於治國之道矣. 雖非進講之書, 淸燕之暇, 間或留意而澄省焉, 則豈不好乎? 上曰, 其言好矣. 雖非進講之書, 可觀於淸燕之暇矣.”

27) 「承政院日記」 723冊(탈초본 39冊) 英祖 7년 5월 25일 丙戌[丁亥] 36/36 기사.

“上曰, 我國亦有進講政要時乎? 晷曰, 臣亦未詳矣.”

28) 「承政院日記」 769冊(탈초본 42冊) 英祖 9년 12월 11일 戊午 14/14 기사.

“景輔曰, 此文, 又以太宗之從諫改過爲言, 蓋以法祖之意, 爲時君陳之矣. 三代以下, 固無如貞觀之治. 而然其從諫改過, 皆欲利而已, 非出於誠. 故先儒, 以粉飾譏之. 今殿下, 則陋視太宗, 而師法成湯, 可矣. 上曰, 所達皆好, 當留意. 而貞觀政要, 亦自好矣.”

29) 「承政院日記」 775冊(탈초본 43冊) 英祖 10년 3월 14일 庚寅 16/17 기사.

“上曰, … 今講禮記幾訖, 講忠定奏議貞觀政要, 亦好矣.”

30) 「承政院日記」 777冊(탈초본 43冊) 英祖 10년 4월 15일 庚申 13/13 기사.

“宗城曰, … 而□□時常目□□何冊而定奪乎? 上曰, 何書可乎? 貞觀政要, 何如? 而欲刊印, 則其工役, 又幾何也? 宗城曰, 貞觀政要, 亦不可不一講, 而卷數不多, 雖欲刊印, 必不難矣. … 上曰, … 前者金在魯則請講春秋左氏, 予則以貞觀政要□□矣.”

31) 「承政院日記」 781冊(탈초본 43冊) 英祖 10년 6월 11일 乙卯 26/27 기사.

왕이 「貞觀政要」가 좋을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玉堂(弘文館)에 비축된 수량을 물었고 金尙星이 進講件은 玉堂에 있지만 講官, 承旨, 史官이 각기 지참해야 하는 건은 필시 부족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왕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이종성이 근래에 사정이 어려워 새로 인출한 것이 없고 중국본[唐本]도 들어오지 못했으니 전에 있던 것에서 태반이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아뢰었다.³²⁾ 이를 통해 당시 왕실에 소장된 「貞觀政要」의 책수가 經筵에 소용될 만큼 넉넉지 않았고 이것이 새로운 간인이 이루어지게 된 직접적 동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긴장 도서에 대한 일련의 논의 후 절차에 따라 領事인 右議政 金興慶에게 의견을 들은 다음,³³⁾ 同年 7월에 「貞觀政要」를 「名臣奏議」에 이어 召對시에 진강할 책자로 확정하고, 芸閣(校書館)에 간인을 명하였다.³⁴⁾ 며칠 후 「貞觀政要」의 책수가 많지는 않으니 進上件과 頒賜件을 함께 인출하자는 金若魯의 건의를 받아들였다.³⁵⁾ 同年 9월 4일에 「貞觀政要」를 이미 들어왔다는 英祖의 말로 미루어 보아 이 날 이전에 최소한 進上件의 인쇄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³⁶⁾

同年 9월 23일의 기사에는 「貞觀政要」의 책수가 6冊이라는 吳瑗의 언급이 확인되며³⁷⁾ 11월 3일에는 「名臣奏議」의 下篇에 誤字가 2군데 있다는 吳瑗의 보고를 듣고 英祖가 차후 강독할 「貞觀政要」의 誤字 여부에 따라 必罰을 엄히 할 것이니 교정에 각별히 주의하라는 명을 校書館에 내렸다.³⁸⁾ 同月 7일에는 「貞觀政要」의 懸吐가 玉堂 관원의 부족문제로 다소 지체 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으나³⁹⁾

“若魯曰, 召對冊子, 當預先稟定, 而名臣奏議則卷帙浩多, 貞觀政要, 未知如何?”

32) 「承政院日記」 782冊(달초본 43冊) 英祖 10년 6월 26일 庚午 13/14 기사.

“宗城曰, 奏議後繼講, 則貞觀政要與綱目俱緊矣. 上曰, 貞觀政要似好, 而玉堂有此冊否? 尙星曰, 進講件則自玉堂可以待令, 而此冊件數無多, 必不足於講官承史之各持矣. 上曰, 書籍之不足何如是耶? 宗城曰, 近因時訕, 既不新印, 又不能貿來唐板, 而前在者則太半闕失之致也.”

33) 「承政院日記」 783冊(달초본 43冊) 英祖 10년 7월 1일 甲戌 6/30 기사.

“眞淳以弘文館言啓曰, 臣尙星, 敬奉聖旨, 召對繼講冊子, 問議于領事處, 則右議政臣金興慶以爲, 如臣朦學謬識, 不能汎濫諸書, 實無管見可以仰對清問. 今聞儒臣之言, 則召對時以名臣奏議後, 繼講貞觀政要爲定云. 臣於是, 更有何異見乎云, 領事之意如此, 敢啓.”

34) 「承政院日記」 783冊(달초본 43冊) 英祖 10년 7월 1일 甲戌 29/30 기사.

“上曰, 今見領事獻議, 則既無異議, 召對時名臣奏議進講後, 當以貞觀政要繼講. 貞觀政要, 斯速印出事, 分付芸閣, 可也.”

35) 「承政院日記」 783冊(달초본 43冊) 英祖 10년 7월 4일 丁丑 19/19 기사.

“上曰, 左傳印出, 其已先役, 而頒賜件, 亦印出乎? 若魯曰, 姑未訖工, 而只印進講件云矣. 上曰, 貞觀政要, 亦依此爲之, 進講件外, 勿印頒賜件, 可也. 若魯曰, 此等處, 亦以節省爲主, 孰不欽仰聖意, 而但進講冊子, 連次印出, 一未頒賜於侍臣, 亦似爲欠典. 至於貞觀政要, 則其卷數, 比左傳頗少, 使之並印頒賜件, 恐未爲不可矣. 上曰, 儒臣所達大體是矣. 卷數既不多, 則使之印出, 而勿爲舉條, 待下單舉行, 宜矣.”

36) 「承政院日記」 786冊(달초본 43冊) 英祖 10년 9월 4일 丙子 14/14 기사.

“上曰, 左傳, 只餘一卷, 貞觀政要, 其已入來, 而繼此進講乎? 若魯曰, 此下卷帙頗大, 有難一次進講而畢矣.”

37) 「承政院日記」 787冊(달초본 43冊) 英祖 10년 9월 23일 乙未 13/13 기사.

“瑗曰, 不然矣. 奏議十七卷矣, 貞觀政要六冊.”

38) 「承政院日記」 790冊(달초본 44冊) 英祖 10년 11월 3일 甲戌 22/22 기사.

“珽曰, 此冊下編, 有誤字二處, 而未及校正以入矣. 請出冊子, 改補以入, 何如? 上曰, 他日進讀時, 奏達誤處, 可也. 此冊則印之已久, 今無可論, 而貞觀政要所印, 則未知何如耶? 俄以賞字, 有所講論矣. 凡事有賞則有罰, 貞觀政要進講時, 如有誤字, 則當依舊典論罪之意, 各別申飭于芸閣, 可也.”

다음 달 12월 20일부터 마침내 「貞觀政要」의 강독이 실시되었다.

다음의 「貞觀政要」의 진강 기록에서 보이는 사실들은 英祖代 판본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데 주요한 지표가 되며, 後序가 지어지게 된 경위와 「貞觀政要」에 대한 英祖의 각별한 관심을 살펴볼 수 있어 주목된다. 「貞觀政要」의 첫 번째 召對는 英祖 10년(1734) 12월 20일 克綏齋에서 진강되었다. 參贊官 李重協, 侍講官 吳瑗, 侍讀官 任珽, 假注書 柳綽, 記注官 洪相朝와 金兌和가 참석하였다. 英祖는 이 책은 마땅히 卷首에 있는 序文, 즉 明 憲宗(成化帝)⁴⁰⁾의 御製序文부터 읽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皇朝의 奎章으로 帝王 정치의 근본이 모두 이 序文 한 장에 들어있다”라고 극찬하였다.⁴¹⁾ 같은 달 24일에는 任珽이 「貞觀政要」의 末端을 새롭게 인출하여 교정하였음을 아뢰었고 그 卷數를 4卷이라고 보고하였다.⁴²⁾

25일에 克綏齋의 召對에서 다시 「貞觀政要」가 진강되었다. 英祖는 「貞觀政要」의 序文이 처음에 인출할 때에 함께 인쇄된 것이라는 任珽의 대답을 들은 후 注書 柳綽에게 명하여 玉堂에 소장되어 있는 唐本(중국본) 「貞觀政要」와 「大明集禮」 初卷의 唐板과 鄉板, 그리고 啓草紙 3장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召對의 말미에 英祖는 “「皇明憲宗御製序文」이 이미 卷首에 갖추어져 있으니 내가 後序를 지어 興感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라고 언급한 후, 任珽에게 명하여 題目을 「貞觀政要後序」로 하고 玉堂에서 가져온 啓草紙에 자신이 불러 주는 後序를 쓰도록 하였다. 쓰는 것을 마치자 英祖는 明 憲宗의 序文은 唐本 「洪武正韻」의 本字로, 자신의 後序는 本字보다 조금 작은 書體로써 左議政 徐命均이 중국에서 돌아온 연후 그에게 善寫하게 하고, 이를 藝閣(校書館)에서 木板에 새겨 인쇄토록 하였다. 이 때 그 善寫者의 官銜 또한 함께 써 넣도록 하였다.⁴³⁾

39) 「承政院日記」, 790冊(탈초본 44冊) 英祖 10년 11월 7일 戊寅 25/26 기사.

“金尙星曰, 近來玉堂, 行公之員甚少, 南泰良與俞健基, 陳疏徑出後, 尙今撕捥, 殊無義意矣. 上曰, 何可若是其撕捥耶? 金尙星曰, 本館召對冊子, 貞觀政要, 今當懸吐, 而即今館僚不齊, 姑待多官出仕, 舉行, 何如? 上曰, 依爲之.”

40) 在位 1464-1487. 明의 9대 황제 朱見深.

41) 「承政院日記」, 792冊(탈초본 44冊) 英祖 10년 12월 20일 辛酉 39/39 기사.

“甲寅十二月二十日二更, 上御克綏齋, 召對入侍時, 參贊官李重協, 侍講官吳瑗, 侍讀官任珽, 假注書柳綽, 記注官洪相朝、金兌和以次入侍. 上曰, 此貞觀政要, 異於他文, 先讀序文, 可也. … 珽曰, 此序果有味矣. 自古帝王之文, 異於匹庶, 於此可見. 上曰, 然. 此是皇朝奎章, 帝王致治之本, 皆入於此序一張.”

英祖는 재위 기간 내내 「貞觀政要」를 강독할 때 마다 明 憲宗의 序文을 대단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42) 「承政院日記」, 792冊(탈초본 44冊) 英祖 10년 12월 24일 乙丑 11/11 기사.

“珽曰, 臣聞貞觀政要末端, 亦方新印較正云矣. 上曰, 政要卷數幾何耶? 珽曰, 四卷云矣.”

43) 「承政院日記」, 792冊(탈초본 44冊) 英祖 10년 12월 25일 丙寅 17/18 기사.

“甲寅十二月二十五日未時, 上御克綏齋. … 上曰, 此貞觀政要序文, 皆初頭印出時, 同爲印耶? 珽曰, 同爲印出也. 上曰, 注書出去, 玉堂所藏唐本貞觀政要, 及大明集禮初卷唐板鄉板, 竝持來, 而政院啓草紙三四丈, 亦爲持來. … 上又曰, 今觀貞觀政要, 皇明憲宗御製序文, 既弁其首矣. 予欲作後序, 以表興感之意. 儒臣, 執筆書之, 可也. 珽取筆墨及政院持來啓草紙. 上曰, 題目, 以貞觀政要後序, 書之, 可也. 珽書之. 上, 口呼曰, (中略: 이하 草稿 「貞觀政要後序」 내용 이어짐) 上曰, 唐本貞觀政要皇明憲宗皇帝御製序文, 及予所製後序, 令藝閣入梓時, 皇朝序文, 則以唐本洪武正韻本字精刊, 予之序文, 比唐本字差少, 而奉使大臣還來後, 使之繕寫授梓, 大臣前行官銜, 亦爲書填事分付, 可也.”

英祖 31년(1755)에 模刻한 明 憲宗 序文을 왕이 右承旨 李得宗에게 보이고 그 筆法을 물었는데, 단박에 洪武正韻體임을 대답한 기록이 보인다.(「承政院日記」, 1123冊(탈초본 62冊) 英祖 31년 9월 10일 辛巳 30/30 기사)

다음날 英祖는 자신이 지은 後序를 가져오도록 하여 尹淳에게 보이면서 “歷朝의 朝字가 맞지 않는 듯하다. 아래쪽에 代字가 있어 [歷]代라고 쓸 수가 없었는데 諸家史書로 고치는 것이 어떠한지 모르겠다.”라며 물었는데, 尹淳이 “지극히 좋으며 代字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하였다. 이에 承旨 李春躋에게 명하여 朝字를 代字로, 그 아래의 前代는 往牒으로, 後世는 將來로 고쳐 쓰도록 하였다. 또한 唐板 『貞觀政要』 初卷의 『大明皇帝御製序文』을 보이면서 비록 皇帝의 親筆인지는 모르겠으나 서문을 模刻하여 목판으로 찍어낼 것을 명하였다.⁴⁴⁾

이 내용을 통하여 현전하는 『貞觀政要』 판본의 卷首에 실려 있는 英祖 後序의 초엽 문장이 원래 ‘夫歷朝史書, 何爲而作也? 蓋述前代之治亂, 爲後世之龜鑑也.’이었는데 英祖가 첫 구절의 歷朝史書를 諸家史書로 고치려 했다가 尹淳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세 부분을 고쳐 ‘夫歷代史書, 何爲而作也? 蓋述往牒之治亂, 爲將來之龜鑑也.’로 썼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첫 구절과 代字가 겹치는 뒷 구절은 ‘噫, 將三代之宏治, 比漢唐之借仁, 王伯之分, 判若黑白.’의 부분으로 생각된다.

해를 넘겨 同王 11년(1735) 2월에 英祖가 『貞觀政要』 序文의 간인이 완료되었는지를 묻자 金若魯가 大臣이 精寫하여 入刊한 후에 字畫이 잘못된 곳이 많아 고쳐 간행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체되었음을 아뢰었다. 다시 頒賜件이 있는지를 묻자 頒賜件이 있으며 序文을 인출한 후에 進上 및 頒賜 諸件에 마땅히 [序文을] 편입하고 進講을 위해 안으로 들인 책 또한 내오기를 청하여 添粧하여 다시 들일 것이라고 대답하였다.⁴⁵⁾ 同月 22일에는 韓師得에게 전교하여 『貞觀政要』의 序文을 쓴 공로로 左議政 徐命均에게 표범 가죽 1벌을 내렸다.⁴⁶⁾ 이후 기록에서는 왕대별 강독 기사는 살필 수 있으나 간행과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朝鮮時代 『貞觀政要』 관련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貞觀政要』의 편찬, 간행과 관련되는 기록은 太祖 4년(1395)의 校正本의 편찬, 世祖 1년(1455)의 註解本 편찬, 肅宗 1년(1675)의 간인 및 頒賜, 英祖 10년-11년(1734-1735) 사이의 간인으로 총 4차례이다. 둘째, 이 중 英祖代의 간인 기록은 『承政院日記』에서 자세히 살필 수 있다. 이때 明 憲宗의 御製序文과 朝鮮 英祖의 後序를 徐命均이 써서 판목에 模刻한 후 그것을 편입한 판본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英祖는

44) 『承政院日記』 792冊(달초본 44冊) 英祖 10년 12월 26일 丁卯 34/35 기사.

“上曰, 玉堂所在貞觀政要後序, 兼春秋出去持入, 可也. 兌和承命而出. 上, 下貞觀政要後序于淳曰, 歷朝之朝字, 似未妥. 下有代字, 故不得用代字, 而改以爲諸家史書, 則未知如何? 大提學, 必爲詳見後, 或有未審處, 達之可也. 淳看畢曰, 至矣盡矣, 無容議爲, 代字雖疊用, 何害之有? 上曰, 然乎? 承旨以代字改朝字, 而其下前代, 以往牒改書, 後世, 以將來改書, 可也. 春躋, 改書訖, 上, 又下貞觀政要初卷曰, 此大明皇帝御製序文也. 雖未可知其果爲親筆, 而模刻此序, 以爲印板, 可也.”

여기에서의 親筆은 혹 중국본 『貞觀政要』에 明 憲宗 御筆을 模刻한 序文이 실려 있어 그것을 가리켰을 가능성도 있지만, 전후의 정황상 親製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45) 『承政院日記』 794冊(달초본 44冊) 英祖 11년 2월 13일 甲寅 37/39 기사.

“上曰, 貞觀政要序文, 尙不刊行耶? 儒臣似知之矣. 若魯曰, 大臣精寫入刊之後, 以字畫之多有訛誤, 方爲改刊, 故至今遷延, 當分付催促矣. 上曰, 有頒賜之件乎? 若魯曰, 亦有頒賜之件. 序文印出後, 當編入於進上及頒賜諸件. 進講內入之冊, 亦當請出, 添粧以入矣. 上曰, 然.”

46) 『承政院日記』 795冊(달초본 44冊) 英祖 11년 2월 22일 癸亥 15/20 기사.

“備忘記, 傳于韓師得曰, 今下豹皮一令, 貞觀政要序文書進左相處賜給.”

직접 後序를 지어 내릴 정도로 「貞觀政要」를 중요시 했으며 이는 다른 군왕보다 월등히 많은 관련 기록의 숫자에서도 드러난다. 셋째, 고려 시기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貞觀政要」는 군왕의 經筵에서 활발히 진강되었다. 「實錄」 및 「承政院日記」에서 파악되는 조선 시기 「貞觀政要」의 진강 기록은 太祖, 成宗, 英祖, 正祖, 純祖의 기사에서 다수 보인다.⁴⁷⁾

3. 現存本 분석

고려 및 조선시기에 간행된 「貞觀政要」의 현존본은 중국 元代의 학자인 戈直이 자신과 여러 학자의 주석을 모아 편찬한 소위 戈直本과 그 이전의 舊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舊本에 해당하는 두 판본은, 戈直本이 나온 이후 대부분 소실된, 吳兢 편집의 原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장에서는 舊本과 戈直本에 해당하는 현존본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문헌 기록, 戈直의 舊本에 관한 언급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기관별 소장현황을 밝히도록 하겠다.

3.1 舊本

3.1.1 高麗 木板本

이 판본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국립중앙박물관에 각 1건씩 소장되어 있다.⁴⁸⁾ 간인 시기는 판본 내에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가로 行數가 7-8행으로 적고 세로 字數가 많은 전형적인 12-13세기 고려 판본의 형태를 띠고 있다.⁴⁹⁾ 광곽, 판심, 어미 등 형태서지사항과 판각 솜씨 등을 미루어 살펴보아도 고려판본인 것이 비교적 명확하다. 3곳의 소장기관에서도 모두 고려 시기의 판본으로 기술하고 있다. 註釋 없이 본문만을 수록하였다. 卷首題는 「貞觀政要」, 版心題는 「政要」이고 광곽은 四周單邊, 半葉 21.5×15.7cm, 8행 15-17자, 上下下向黑魚尾이다.⁵⁰⁾ 기관별 소장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⁵¹⁾

47) 「太祖實錄」卷15 太祖 7년 10월 5일 丁未 1번째 기사, 「成宗實錄」卷15 成宗 3년 2월 21일 戊子 8번째 기사, 「成宗實錄」卷111 成宗 10년 11월 4일 乙酉 4번째 기사, 「英祖實錄」卷39 英祖 10년 12월 20일 辛酉 1번째 기사, 「英祖實錄」卷100 英祖 38년 7월 10일 庚午 1번째 기사, 「承政院日記」1656冊(탈초본 88冊) 正祖 13년 5월 8일 甲子 9/9 기사, 「承政院日記」1675冊(탈초본 89冊) 正祖 14년 3월 23일 癸卯 23/24 기사, 「純祖實錄」卷9 純祖 6년 9월 20일 甲子 2번째 기사 등 다수.

48) 그 외 高麗本으로 임기영(2018)은 誠庵本 2건, 김재갑 소장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접근이 어려워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49) 임기영(2018), 2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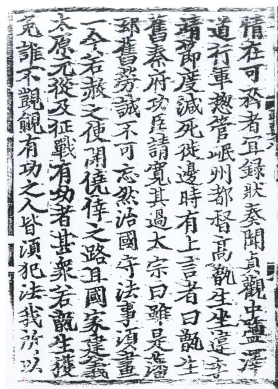
50) 半葉 크기는 고려대학교 도서관 목록 정보 기준. 行字數, 魚尾는 가장 일반적인 숫자와 종류를 표기한 것으로, 일부 張에 예외가 있다. 특정 張에서 界線이 있는 경우가 있다.

<표 1> 高麗 木板本の 소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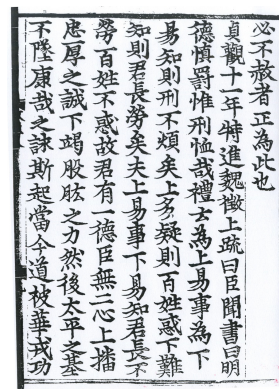
연번	소장처	관리번호	권책수	印記	조사방법
1	연세대학교 도서관	고서(귀) 681	1冊(零本: 存本: 卷8, 9, 10 / 중간 缺落 있음)		影(MF)
2	고려대학교 도서관	만송 貴 343	3冊(零本: 存本: 卷1-9 / 중간 缺落 있음)		影(영인도서)
3	국립중앙박물관	구 8659	1冊(零本)		(열람 불가)

세부 소장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대학교에는 만송 貴 343(零本 3冊)의 1건이 소장되어 있다. 이 판본의 첫째 책에서 卷1 7a-9b · 10a · 17b, 卷2 1a · 4b-6a · 13b-18a · 24b-27b까지, 둘째 책에서 卷3 4a-8a · 12b-13a · 14b-18a · 24b-25a · 32b-35b, 卷4 1a · 5b-7a · 11b-13a · 19b-25a · 27b-28b까지, 셋째 책에서 卷5 5a-10a · 11b-12a · 16b-17a · 20b, 卷6 1a-9a · 10b-11a · 12b-13a · 15b-16a · 17b · 22a-22b, 卷8 2a-18b까지를 수록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에 고서(귀) 681(零本 1冊)의 1건이 소장되어 있다. 이 소장본은 卷8 2a-4a · 8b-10a · 13b-14a · 16b-18b, 卷9 1a · 4b-5a · 6b-10a · 11b-12a · 21b, 卷10 1a · 11b-12a · 23b까지를 수록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구8659(零本 1冊)의 1건이 소장되어 있다. 이 소장본은 상태가 좋지 않아 열람이 불가하였으며, 온라인에 업로드 되어 있는 이미지는 卷8 1b, 2a면이다.

이상의 3건의 소장본에서 중복되는 면을 비교하면 판식 및 내용상에서 일치하는 同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에 補刻된 판이 삽입되어 있으며 다른 판과 비교하여 인쇄 상태 및 字體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補版이 인쇄 상태가 훨씬 선명하고 자체가 고르다. 반면에 原版으로 추정되는 부분은 목판의 마멸된 흔적이 뚜렷하여 최초 판각 후 여러 번 찍은 후에 인쇄한 後刷本임을 알 수 있으며 판각한 숨씨도 조잡하다(<그림 1> 참조).



原版 부분 예시(卷8 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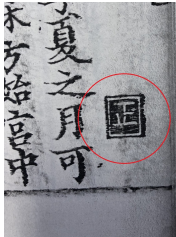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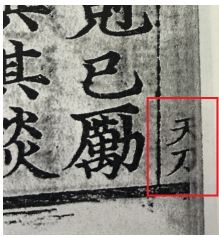
補版 부분 예시(卷8 9a)

<그림 1> 연세대 소장본(고서(귀) 681 0)의 原版, 補版 비교

51) 조사방법은 실사한 경우 ‘實’, 영인본으로 조사한 경우 ‘影’, 소장기관 목록을 통하여 조사한 경우 ‘목록’으로 표시하였다. 이하 다른 판본의 경우도 동일하다.

고려대 소장 만송 貴 343과 연세대 소장 고서(귀) 681에서 중복되는 부분 중 補版에 해당하는 張을 살펴보면 어느 한 쪽이 原版이 아닌, 모두 補版으로 확인된다. 누락된 張이 적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두 소장본이 같은 시기에 간인된 동일 판본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補刻으로 확인되는 張次는 卷1 9a-9b, 卷2 5a-5b · 14a-15b · 25a-25b · 27a-27b, 卷3 4a-5b · 7a-7b · 15a-15b · 17a-17b · 33a-35b, 卷4 6a-6b · 12a-12b · 21a-22b · 24a-24b, 卷5 7a- 8b, 卷6 5a-6b · 8a-8b · 22a-22b, 卷8 7a-7b · 9a-17b · 18b, 卷9 4b · 8a-9b이다. 補版 간에도 字體, 魚尾, 匡郭의 크기 등에서 차이가 보인다. 일부 補版에는 版心에 黑口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上下黑口: 卷4 22張, 卷8 11 · 12張 / 上黑口: 卷4 24張, 卷8 14張), 다른 시기에 판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卷1 말미에 五千三百六十八字라는 글자수가 표기되어 있는데, 전체 完帙의 분량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일부 張의 版心에 검은 방형의 표시가 있으며(卷6 4 · 7張, 卷8 2 · 14張), 張内の 방형안에 正字가 음각되어 삽입된 경우도 있다.(卷6 2b) 또한 각수로 추정되는 天刀라는 명칭이 卷4 12b의 판심 아래에 새겨져 있다(이상 <그림 2> 참조).

			
黑口 예시 (卷8 11b)	版心の 검은 방형 표시 예시 (卷6 4b)	張内の 正字 표시 (卷6 2b)	天刀 명칭 (卷4 12b)

<그림 2> 高麗 木板本에 나타난 黑口, 版心の 검은 방형 표시, 張内の 正字 표시, 天刀 명칭

이 高麗 木板本과 戈直本の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적지 않은 차이가 관찰된다.⁵²⁾ 高麗 木板本の 내용은 戈直本과 대조했을 때, 다른 글자로 바꾸어 사용하거나, 글자 · 문구가 추가 또는 삭제되거나, 기사의 배치가 다른 점 등이 차이가 있으며, 본문이 아닌 戈直本の 주석에 나오는 내용이 삽입된 사례가 일부 있다([부록 1] 연번 104, 105).⁵³⁾ 내용상에서의 적지 않은 차이는 高麗 木板本이

52) 양 판본의 비교 결과는 분량이 많아 [부록 1]에 별도로 정리하였고, 괄호 안의 연번은 [부록 1]에 표시된 연번이다. 비교 대상인 戈直本은 현존본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판단되는 明 內府 간행의 成化刊本(成化元年本)이 적당하겠으나, 전체 텍스트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온라인상에서 영인이미지가 제공되는 奎中1817(英祖代 戊申字本, 규장각 소장)을 활용하였다.

53) 戈直本의 내용을 참조했을 가능성보다는 高麗 木板本이 간행되었을 당시 底本의 본문이 해당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戈直本이 편찬되기 이전에 존재했을 舊本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점을 더욱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戈直이 본인의 주석에서 언급하고 있는 舊本과 관련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戈直은 새롭게 주석본을 편집하면서 여러 학자의 의견을 모아 넣었을 뿐 아니라 본인의 판단 하에 기사의 배치를 새롭게 하고 舊本에서 기사의 연도를 확정하지 않고 표시한 경우 『資治通鑑』 등의 사료를 검토하여 교정하였다. 戈直本의 주석에는 이러한 수정내용이 총 23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여 高麗 木板本과의 대응여부를 검토하면 다음 <표 2>와 같다.⁵⁴⁾

<표 2> 戈直本에 언급된 舊本 수정 내용 및 高麗 木板本 대응 여부

연번	編-순서	해당 기사	舊本 언급 내용	대응여부
1	論政體第二-10	貞觀八年, 太宗謂侍臣曰 隋時百姓, … 太宗曰卿言 是也.	舊本에 이 章은 論忠義편에 붙어 있었다. 지금 살펴보면 그 말이 政體에 더욱 절실하므로 여기에 붙인다.[舊本, 此章附忠義篇, 今按其言於政體尤切, 故附於此.]	확인불가
2	論求諫第四-7	太常卿唐制, 韋挺嘗上疏 陳得失, … 用沃朕懷, 一 何可道.	舊本에는 이 글이 7 章(貞觀六年)과 한 章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살펴보니 내용이 같지 않아 두 章으로 나누었다.[舊本, 此與 上章通爲一章, 今按不同, 分爲二章.]	△ (연번 44, 50)
3	論求諫第四-11	貞觀十七年, 太宗問諫議 大夫褚遂良曰 … 此則危 亡之禍, 可反手而待也.	舊本에는 이 章이 앞 章(貞觀十六年)과 통틀어 한 章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살펴보니 내용이 달라서 두 章으로 나누고 이어서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章 앞에 연도를 표시했다.[舊本, 此與前 章通爲一章, 今按不同, 分爲二章, 仍按通鑑, 標年於此章之首.]	확인불가
4	論納諫第五-5	貞觀三年, 李大亮爲涼州 都督, … 今以賜卿, 宜加 尋閱.	舊本에는 이 章의 책머리에 貞觀初라고 하였으나, 지금 『資治通 鑑』의 내용에 의거하여 연도를 표기했다.[舊本, 此章之首曰貞觀 初, 今按通鑑標年.]	△ (연번 54)
5	論納諫第五-7	貞觀十五年, 遣使詣西域, … 太宗遽令止之.	舊本에는 이 章의 첫 머리에 貞觀中이라고 했으나, 지금 『資治通 鑑』에 의거하여 연도를 표기했다.[舊本, 此章之首曰貞觀中, 今 按通鑑標年.]	○ (연번 59)
6	論納諫第五-10	太宗嘗怒苑西監, … 因染 以成性, 故有今日之諫.	舊本에는 이 章이 앞 章(貞觀十八年)과 통틀어 한 章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 살펴보니 내용이 같지 않아 두 章으로 나눴다.[舊 本, 此章與前章通爲一章, 今按不同, 分爲二章.]	확인불가
7	論忠義第十四-6	貞觀八年, 先是桂州, … 其屈突通張道源兒子, 宜 各與一官.	舊本에 의하면, 이 章은 直諫類 부분에 편집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에 편집해 넣는다.[舊本, 此章附直諫類, 今附入此.]	△ (연번 136)
8	論忠義第十四-8	貞觀九年, 蕭瑀爲尙書左 僕射, … 雖死之日, 猶生 之年.	舊本에는 이 章 첫머리에 貞觀中이라고 하고 第5章(貞觀六年) 과 한 章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資治通鑑』에서 표기한 연대에 따라 이곳으로 편집해 넣었다.[舊本, 此章首曰貞觀中, 與第五章 合爲一章, 今按通鑑標年, 附入于此.]	△ (연번 137)
9	論忠義第十四-13	貞觀十五年, 詔曰 朕聽朝 之暇, … 具錄奏聞, 於是 多從矜宥.	舊本에는 이 章이 刑法편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편집해 넣었 다.[舊本, 此章在刑法篇, 今附入于此.]	△ (연번 153)
10	論忠義第十四-14	貞觀十九年, 太宗攻遼東 安市城, … 賜絹三百匹, 以勸勵事君者.	舊本엔 이 章이 第12章(貞觀十二年)과 한 章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資治通鑑』의 標年(貞觀19년)에 의거하여 여기에 편집해 넣 었다.[舊本, 此章與第十二章, 合爲一章, 今按通鑑標年, 附入于此.]	○ (연번 154)

54) 대응여부는 高麗 木板本에서 落帙되어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확인불가’, 戈直의 언급과 정확히 대응되는 경우는 ‘○’, 일부만 대응되고 나머지는 확인할 수 없거나 대응되지 않는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대응 내용이 高麗 木板本과 戈直本 사이의 차이를 정리한 [부록 1]의 내용 중 어느 연번에 해당하는 지도 함께 기술하였다.

연번	編-순서	해당 기사	舊本 언급 내용	대응여부
11	論儉約第十八-4	貞觀十一年, 詔曰朕聞死者終也, … 及勳戚家, 仍錄奏聞.	舊本에 이 章이 論慎終편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붙인다.[舊本, 此章在慎終篇, 今附入此.]	△ (연번 180)
12	論儉約第十八-5	岑文本爲中書令, 宅卑濕, … 更得言產業乎. 言者歎息而退.	舊本은 이로부터 아래 네 章이 모두 論食鄙편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붙인다.[舊本, 自此下四章, 並在食鄙篇, 今附入于此.]	△ (연번 180)
13	慎所好第二十一-4	貞觀七年, 工部尙書段綸, … 乃詔削綸階級, 並禁斷此戲.	舊本에 이 章은 論儉約편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붙인다.[舊本, 此章在儉約篇, 今附於此.]	△ (연번 195)
14	杜讒邪第二十三-2	貞觀七年, 太宗幸蒲州, … 元楷慙懼, 數日不食而卒.	舊本에 이 章은 論食鄙편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붙인다.[舊本, 此章在食鄙篇, 今附入此.]	확인불가
15	杜讒邪第二十三-3	貞觀十年, 太宗謂侍臣曰太子保傅, … 近習之間, 尤宜深慎. 太宗曰善.	舊本에 이 章은 直諫편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붙인다.[舊本, 此章在直諫篇, 今附入於此.]	확인불가
16	杜讒邪第二十三-4	尙書左僕射杜如晦奏言, … 於是, 流陳師合於嶺外.	舊本에 이로부터 이하 세 章은 論食鄙편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붙인다.[舊本, 自此已下三章, 在食鄙篇, 今附入此.]	확인불가
17	論食鄙第二十六-6	貞觀十六年, 太宗謂侍臣曰, … 卿等宜思此語爲鑑識.	舊本에 이 章은 鑑戒편에 거듭 나오는데 지금 살펴보면 이 章은 담욕을 비유함이 절실하므로 저쪽을 버리고 이쪽을 보존하였다.[舊本, 此章重出鑑戒篇, 今按此章喻貪爲切, 故去彼存此.]	△ (연번 69)
18	崇儒學第二十七-1	太宗初踐祚, 卽於正殿之左, … 又詔勳賢三品已上子孫, 爲弘文學生.	舊本에는 이 章과 뒤 3章이 통합되어 한 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살펴보니 崇儒의 내용은 같지만 典故가 다르기에 3章으로 나눴다.[舊本, 此與後三章通爲一章, 今按崇儒雖同, 典故則異, 分爲三章.]	확인불가
19	崇儒學第二十七-5	貞觀四年, 太宗以經籍去聖久遠, … 名曰五經正義, 付國學施行.	舊本에서는 五經疏義 이하를 별도의 章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하나의 章으로 만들었다.[舊本, 五經疏義, 另爲一章, 今合爲一章.]	확인불가
20	論刑法第三十一-1	貞觀元年, 太宗謂侍臣曰死者不可再生, … 天下二十九人, 幾致刑措.	舊本에는 太宗又曰 이하를 별도의 章으로 설정했는데, 지금 한 章으로 합친다.[舊本, 自太宗又曰以下, 另爲一章, 今合爲一章.]	확인불가
21	辯興亡第三十四-2	貞觀二年, 太宗謂黃門侍郎王珪曰, … 徒益其奢侈, 危亡之本也.	舊本에는 이 章이 論奢縱편에 거듭 나왔는데, 지금 그것을 버리고 이것을 보존하였다.[舊本, 此章重出奢縱篇, 今去彼存此.]	확인불가
22	辯興亡第三十四-4	貞觀九年, 北蕃歸朝人奏 … 以此論之, 齊主爲劣.	舊本에는 이 章이 論奢縱편에 거듭 나왔는데, 지금 그것을 버리고 이것을 보존하였다.[舊本, 此章重出奢縱篇, 今去彼存此.]	확인불가
23	議安邊第三十六-1	貞觀四年, 李靖擊突厥頡利, … 遂覺勞費日甚, 幾失久安之道.	舊本에 李大亮疏 이하로부터 太宗不納까지는 별도로 한 章이 되었고, 十三年 이하는 앞 단락에 붙여 한 章이 되었다. 지금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의 일이므로 그 말을 차례대로 놓고 합하여 한 章으로 만들었다.[舊本, 李大亮疏以下至太宗不納, 另爲一章, 十三年以下, 接前段爲一章, 今按其是一事, 因次第其辭, 合爲一章.]	확인불가

<표 2>의 대응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論求諫第四-7(연번 2, 이 연번은 <표 2>의 번호임. 이하 동일)은 윗 章(貞觀六年)과 한 章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은 일치하지만, 高麗 木板本에 서는 第四가 아닌 第五에 기사가 놓인 점이 차이가 있다. 論納諫第五-5(연번 4)의 경우 해당 기사가 貞觀三年이 아닌 연도가 미정인 점은 일치하지만 원래 표기가 貞觀初가 아닌 貞觀中이다. 論納諫第

五-7(연번 5)은 주석의 내용과 동일하다. 論忠義第十四-6(연번 7)은 忠義편에 해당 기사가 없는 점은 일치하고 直諫편에 배치된 점은 확인이 불가하다. 論忠義第十四-8(연번 8)은 해당 기사가 貞觀九年이 아닌 미정인 것과 두 章이 떨어지지 않고 이어서 등장한다는 점은 일치하지만 줄을 바꾸어 별도의 章으로 구분하였다. 論忠義第十四-13(연번 9)은 論忠義第十四에 해당 기사가 없는 것은 일치하고 刑法편에 배치된 점은 확인이 불가하다. 論忠義第十四-14(연번 10)는 貞觀十二年이 貞觀中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戈直本 주석의 내용과 같다. 論儉約第十八-4(연번 11)는 論儉約第十에 해당 기사가 없는 것은 일치하고 愼終편에 배치된 점은 확인이 불가하다. 論儉約第十八-5(연번 12)는 언급한 기사 5건이 모두 論儉約第十에 없다는 점이 일치하고 貪鄙편에 배치된 점은 확인이 불가하다. 愼所好第二十一-4(연번 13)는 愼所好편에 없는 점은 일치하지만 儉約편에도 해당 기사가 없다. 論貪鄙第二十六-6(연번 17)은 君臣鑑戒에 나오는 점은 일치하고 貪鄙편에 重出된 점은 확인이 불가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高麗 木板本이 戈直本 편찬 이전 존재했던 舊本에 가까운 판본이라는 사실은 비교적 명확하다. 다만 戈直이 언급하고 있는 舊本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高麗 木板本이 수록하고 있는 편명을 戈直本과 비교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高麗 木板本과 戈直本の 篇名 비교

高麗 木板本		戈直本	
卷次	篇名	卷次	篇名
卷1	[편명 불명] 第一, 第二	卷1	論君道第一, 論政體第二
卷2	任賢第三, 求諫第四, 納諫第五	卷2	論任賢第三, 論求諫第四, 論納諫第五, 附: 直諫
卷3	[편명 불명] 第六 論擇官第七, 論封建第八	卷3	論君臣鑑戒第六, 論擇官第七, 論封建第八
卷4	論太子諸王定分第九, 尊師傅第十, 教戒太子諸王第十一, 規諫太子第十二	卷4	論太子諸王定分第九, 論尊敬師傅第十, 論教戒太子諸王第十一, 規諫太子第十二
卷5	[편명 불명] 第十三, 第十四 論孝友第十五, 論公平第十六, 論誠信第十七	卷5	論人義第十三, 論忠義第十四, 論孝友第十五, 論公平第十六, 論誠信第十七
卷6	論儉約第十八, 論謙讓第十九, 論仁惻第二十, 愼所好第二十一, 愼言語第二十二, 杜讒邪第二十三, 論悔過第二十四, 論奢縱第二十五, 論貪鄙第二十六	卷6	論儉約第十八, 論謙讓第十九, 論仁惻第二十, 愼所好第二十一, 愼言語第二十二, 杜讒邪第二十三, 論悔過第二十四, 論奢縱第二十五, 論貪鄙第二十六
卷7	[편명 불명] 第二十七~第二十九	卷7	崇儒學第二十七, 論文史第二十八, 論禮樂第二十九
卷8	[편명 불명] 第三十 論刑法第三十一, 論敕令第三十二, 論貢獻第三十三	卷8	論務農第三十, 論刑法第三十一, 論敕令第三十二, 論貢賦第三十三, 辨興亡第三十四
卷9	議征伐第三十四, 議安邊第三十五	卷9	議征伐第三十五, 議安邊第三十六
卷10	論行幸第三十六, 論畋獵第三十七, 論祥瑞第三十八, 論災異第三十九, 論愼終第四十	卷10	論行幸第三十七, 論畋獵第三十八, 論災祥第三十九, 論愼終第四十

戈直本에는 辯興亡第三十四가 있고 高麗 木板本에는 없기 때문에 이후 편의 번호가 하나씩 차이가 나게 된다. 辯興亡편 대신 高麗 木板本은 論災異편을 추가하여 총 40편을 맞추고 있다. 祥瑞와 災異를 분리한 高麗 木板本과는 달리 戈直本은 두 편을 합쳐 災祥편을 배치하였다. 그 외에는 편명 앞에 論字의 포함여부와 일부 글자가 다른 점이 차이가 있다.

3.1.2 乙亥字本 「貞觀政要註解」 卷5

이 판본은 世祖 1년(1455)에 集賢殿 校理 洪應과 韓繼禧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한 「貞觀政要註解」의 현존본으로 판단된다. 이 판본은 널리 유통되었던 戈直本의 주석이 아닌 조선 초기 학자들의 독자적인 주석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가 있다. 乙亥字로 간인되었으며 卷尾題⁵⁵⁾는 ‘貞觀政要註解’, 版心題는 ‘貞觀政要’이고, 광곽은 四周單邊, 半葉 32.5×19.8cm, 8행 17자, 上下內向 黑魚尾이다.⁵⁶⁾ 소장현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乙亥字本 「貞觀政要註解」 卷5의 소장현황

연번	소장처	관리번호	권책수	印記	조사방법
1	국립중앙도서관	古貴0237-4	1冊(零本 : 存本: 卷5)		影(MF)

국립중앙도서관에 古貴0237-4(零本 1冊)의 1건이 소장되어 있으며 卷5 3a-8a·9a-28b까지를 수록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圈點으로 표시하며 독서한 흔적이 남아있다.

이 판본을 戈直本에 언급된 舊本의 내용을 정리한 <표 2>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論忠義第十四-6(연번 7)과 같이 忠義편에 貞觀八年의 기사가 등장하지 않는다(8a). 論忠義第十四-8(연번 8)과 같이 해당 기사의 머리에 貞觀九年이 아닌 貞觀中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戈直本의 제5장인 貞觀六年의 기사와 연속해서 등장한다.(7b, 8a) 論忠義第十四-13(연번 9)과 같이 論忠義第十四에 貞觀十五年 기사가 없다(11b). 論忠義第十四-14(연번 10)와 같이 해당 기사와 戈直本의 제12장인 貞觀十二年 기사가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사의 연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11a, 11b).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乙亥字本 「貞觀政要註解」 卷5 역시 앞서의 高麗 木板本과 마찬가지로 戈直本 편찬 이전의 舊本에 가깝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世祖 연간까지도 戈直本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았거나 최소한 이 판본을 제작할 당시에는 활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⁵⁷⁾

55) 張1이 결락되어 卷首題는 알 수 없음.

56) 국립중앙도서관 목록 정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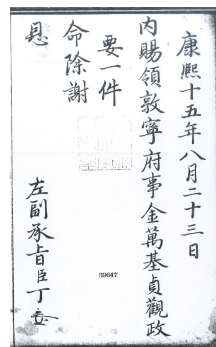
57) 乙亥字本 「貞觀政要註解」 卷5와 高麗 木板本 卷5의 문자 차이에 대해서는 [부록 2]에 정리하였다.

3.2 戈直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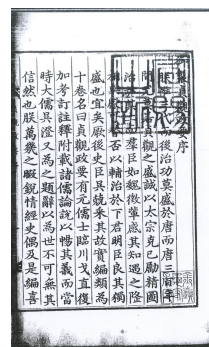
3.2.1 肅宗代 戊申字本

이 판본은 肅宗 1년(1675)에 왕명으로 校書館에서 간인한 것의 현존본으로 판단된다. 이는 戈直本 『貞觀政要』를 조선에서 간인한 가장 이른 시기의 현존본이다. 卷首에 成化 元年(1465) 8월초 1일의 明 憲宗 御製序文, 吳澄의 題辭, 至順 4년(1333)의 郭思貞의 書, 戈直 書, 吳兢의 貞觀政要序, 篇目, 集論에 포함된 주석가들의 명단인 集論諸儒姓氏가 순서대로 편입되어 있다.

이 판본을 肅宗 시기의 것으로 판단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의 古 5130-3의 全6冊 중 第1冊의 표지 背面에 墨書된 ‘康熙十五年(肅宗 2년, 1676)八月二十三日/內賜領敦寧府事金萬基 貞觀政/ 要一件/命除謝/恩/ 左副承旨臣丁[手缺]’의 內賜記와 첫 장 우측 상단에 찍힌 宣賜之記의 內賜印이다(<그림 3> 참조). 이 소장본을 기준으로 각 기관의 同本을 모두 肅宗代 판본으로 확정할 수 있다.



康熙 15년(1676) 內賜記



宣賜之記의 內賜印

<그림 3> 古 5130-3의 康熙 15년 內賜記와 宣賜之記의 內賜印

이 판본의 卷首題와 版心題는 모두 ‘貞觀政要’이며, 戊申字로 인쇄되었다. 형태서지사항으로 광곽은 四周雙邊, 半葉 25.8×17.4cm, 10행 18자, 上下內向混葉(2-3葉)花紋魚尾이다.⁵⁸⁾ 기관별 소장현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肅宗代 戊申字本の 소장현황

연번	소장처	관리번호	권책수	인記	조사방법
1	고려대학교 도서관	만송 B7 A127	10卷 6冊		實
2	서울대학교 규장각	古 5130-3	10卷 6冊	內賜記: 康熙十五年… 印: 宣賜之記 金鎮龜守甫印	影(MF)
3	서울대학교 규장각	海土 한 412	3冊(零本: 存本: 卷5-10)		實
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B6C 13	5冊(零本: 存本: 卷2-10)		影(MF)

58) 실사한 海土 한 412의 조사 결과 기준.

세부 소장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만송 B7 A127(10卷 6冊)의 1건이 소장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古5130-3(10卷 6冊), 海士 한 412(零本 3冊)의 2건이 소장되어 있다. 古5130-3은 상술한 바와 같이 肅宗 2년의 內賜記가 있으며, 內賜를 받은 金萬基의 아들인 金鎭龜의 所藏印인 金鎭龜守甫印⁵⁹⁾과 內賜印인 宣賜之記가 권두에 찍혀있다. 海士 한 412의 경우 卷5-卷10까지를 수록하고 있으며 일부에 圈點으로 표시하며 독서한 흔적이 남아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B6C 13(零本 5冊)의 1건이 소장되어 있으며 卷2-10까지를 수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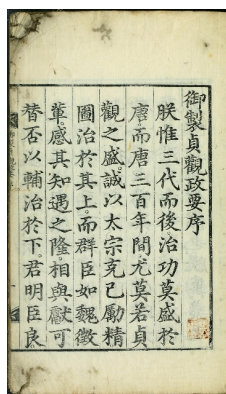
3.2.2 英祖代 戊申字本

이 판본은 英祖 10년과 11년(1734-1735)에 걸쳐 왕명으로 「貞觀政要」를 간인했다는 기록을 반증하는 현존본으로 판단된다. 이 英祖代 판본은 卷首의 구성에 따라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편의상 첫 번째 판본을 戊申字本 A, 두 번째 판본을 戊申字本 B로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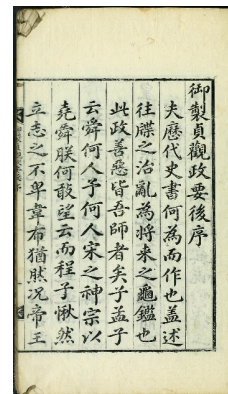
戊申字本 A는 肅宗代 판본과 卷首의 구성이 동일한 것으로 明 憲宗 序文을 비롯하여 모두 활자로 인쇄되었으며 卷首 및 본문의 내용에 懸吐가 달려 있다. 이에 비하여 戊申字本 B는 明 憲宗의 序文에 이어 英祖의 後序가 같이 첨부되어 있으며 이 두 서문은 모두 목판에 模刻하여 편입되었다(<그림 4> 참조⁶⁰⁾). 그 외에 두 판본의 구성과 내용, 형태서지사항은 동일하다.



戊申字本 A의 明 憲宗 序



戊申字本 B의 明 憲宗 序



戊申字本 B의 朝鮮 英祖 後序

<그림 4> 英祖代 戊申字本 A와 戊申字本 B의 서문 비교

이 두 건의 판본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承政院日記」 기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첫째, 戊申字本 A는 戊申字本 B보다 시기적으로 선행하는 판본으로 판단된다. 이는 明 憲宗

59) 守甫는 金鎭龜의 字이다.

60) <그림 4>에 사용된 판본은 奎中1817(戊申字本 A, 규장각 소장), 18.48(戊申字本 B, 버클리대학교 도서관 소장)이다.

의 序文 및 英祖의 後序를 模刻하여 간인한 후 활자로 明 憲宗의 序文만을 편입하여 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戊申字本 A는 英祖 10년(1734) 12월 20일과 25일의 召對를 위해 간인하여 懸吐를 단 것으로 英祖가 25일에 “이 『貞觀政要』의 序文은 모두 처음에 인출할 때에 함께 인쇄한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의 序文이 바로 이 戊申字本 A의 활자 인쇄 明 憲宗 序文으로 판단된다. 셋째, 戊申字本 B는 12월 25일에 처음 초고를 짓고 26일에 尹淳과 상의하여 최종적으로 수정한 英祖의 後序와 기존 戊申字本 A에 편입됐던 明 憲宗 序文의 내용을, 『洪武正韻』의 本字의 書體를 따라 徐命均이 善寫하고 이를 模刻한 것을 편입한 판본이다. 상술한 『承政院日記』의 기록을 감안할 때 英祖 11년(1735) 2월 13일 이후에 최종적으로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戊申字本 A가 첫 두 차례의 『貞觀政要』 강독에 활용되었으며 이후 戊申字本 A의 구성에서 활자로 간인된 明 憲宗 序文을 빼고 새로 목판에 模刻한 2개의 序文을 편입하여 戊申字本 B를 간행한 것이다.

이 판본의 卷首題와 版心題는 모두 ‘貞觀政要’이다. 형태서지사항으로 광곽은 四周單邊, 半葉 25.4×16.7cm, 10행 18자,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다.⁶¹⁾ 기관별 소장현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英祖代 戊申字本の 소장현황

구분	연번	소장처	관리번호	권책수	印記	조사방법
戊申字本 A	1	국립중앙도서관	일산古602-17	10卷 6冊		實
	2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1817	10卷 4冊	弘齋	影(온라인 원문)
	3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1821	10卷 6冊		목록
戊申字本 B	1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1815	10卷 6冊		影(MF)
	2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1471	10卷 6冊	弘文館, 編輯局保管, 學部圖書	목록
	3	버클리 동아시아 도서관	18.48	10卷 5冊		影(온라인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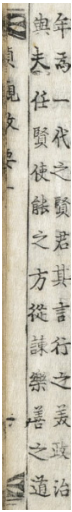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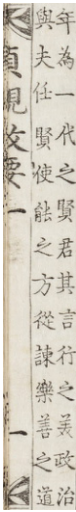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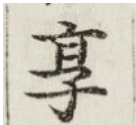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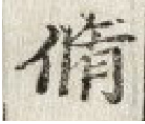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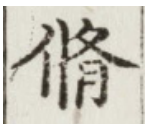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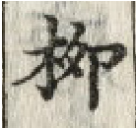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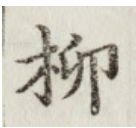
戊申字本 A의 세부 소장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奎中1817(10卷 4冊), 奎中1821(10卷 6冊)의 2건이 소장되어 있다. 奎中1817의 경우 表紙의 冊次가 元, 亨, 利, 貞으로 표시되어 있어 奎4冊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상술한 『承政院日記』 英祖 10년(1734) 12월 24일의 기사에서 언급된 『貞觀政要』의 冊數와 일치한다. 또한 특이한 점으로 第1冊 卷首의 첫 장에 있는 正祖의 藏書印인 弘齋를 제외하면 각 책의 권두 부분에 藏書印이 찍혀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로 방향이 긴 직사각형 부분이 모두 오래져 缺落되어 있다. 아마도 책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이전 주인의 藏書印을 고의로 오래낸 것으로 생각된다. 두 건 모두 卷首를 비롯한 전 내용에 懸吐가 달려 있어 經筵의 용도로 활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일산古602-17(10卷 6冊)의 1건이 소장되어 있다.

61) 실사한 일산古602-17의 조사 결과 기준.

戊申字本 B의 세부 소장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奎中1815(10卷 6册), 奎中1471(10卷 6册)의 2건이 소장되어 있다. 奎中1471에는 弘文館, 編輯局保管, 學部圖書의 장서인이 찍혀있다. 두 건 모두 懸吐가 달려 있어 왕의 강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외 소장본으로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에 ASAMI 18.48(10卷 5册)의 1건이 소장되어 있다. 零本이 아닌 完帙이며 원래 6册이었던 것을 5册으로 다시 粧册한 것으로 보인다.

3.2.3 壬辰字本

이 판본은 외형상으로는 英祖代 戊申字本과 거의 유사하여 소장기관 목록의 기술 내용만을 참조하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魚尾의 세부 모양, 小字를 사용한 戊申字本에 비해 本字를 사용한 壬辰字本 版心題의 크기, 각 글자의 字體 등을 비교해 살펴보면 異本임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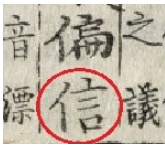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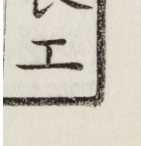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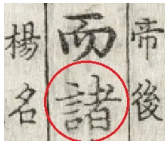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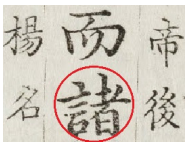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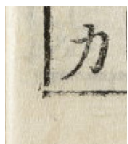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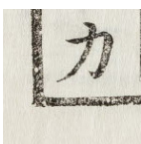
魚尾, 版心題 비교		字體(享·脩·柳字) 비교	
英祖代 戊申字本	壬辰字本	英祖代 戊申字本	壬辰字本
			
			
			

<그림 5> 英祖代 戊申字本과 壬辰字本の 魚尾, 版心題, 字體 비교

卷首의 구성은 明 憲宗 御製序文과 英祖의 後序가 英祖代 무신자본B와 마찬가지로 목판에 模刻되어 첨부되어 있으며, 이어서 吳澄의 題辭, 郭思貞과 戈直의 書, 吳兢의 序, 篇目, 集論諸儒姓氏가 차례로 편입되어 있다.

62) <그림 5>에 사용된 판본은 奎中1817(英祖代 戊申字本, 규장각 소장), 奎中323(壬辰字本, 규장각 소장)이다.

이 판본은 그 수량이 모든 『貞觀政要』 판본 중에서 가장 많으나 內賜記 등의 단서가 없어 그 시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다만 英祖의 後序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英祖 11년(1735) 이후의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 판본의 활자에 대해서 황천오는 戊申字로,⁶³⁾ 김소희는 壬辰字로 판단하였으며,⁶⁴⁾ 서울대학교 규장각 및 국립중앙도서관은 戊申字로, 연세대학교 도서관은 壬辰字로 기술하고 있다. 김소희는 이 판본을 壬辰字로 판단한 이유로 활자와 인판의 형태를 근거로 들었는데, 英祖代 戊申字本이 오래 사용한 활자의 특징인 글자획이 가늘어진 현상이 보이고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반면 이 판본의 경우 인쇄상태가 선명하고 활자 획이 비교적 온전하다. 英祖 48년(1772)의 壬辰字 주조 이후의 활자 인쇄는 종전의 組立式 印版에서 변경된 固着式 印版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조립식과 달리 광곽의 네 둘레에 벌어진 틈이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⁶⁵⁾ 이 판본의 판식이 바로 그러하며 英祖代 戊申字本의 경우 광곽 둘레에 틈이 보이고 있다(<그림 6> 참조⁶⁶⁾). 따라서 이 판본이 壬辰字가 주조된 英祖 48년(1772) 이후에 간인된 것은 비교적 확실해 보이며, 간인 시기를 英祖 재위 후기 또는 正祖 재위 연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⁶⁷⁾

활자 마멸 여부		匡廓 둘레의 틈 여부	
英祖代 戊申字本	壬辰字本	英祖代 戊申字本	壬辰字本
			
			

<그림 6> 英祖代 戊申字本(奎中1817)과 壬辰字本(奎中323)의 인쇄 상태 차이 비교

이 판본의 卷首題와 版心題는 모두 ‘貞觀政要’이다. 형태서지사항으로 광곽은 四周單邊, 半葉 24.6×16.6cm, 10행 18자,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다.⁶⁸⁾ 기관별 소장현황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63) 황천오, “貞觀政要,” 『國學資料』 25(1977), 7.

64) 김소희(2015), 103.

65) 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315.

66) <그림 6>에 사용된 판본은 奎中1817(英祖代 戊申字本), 奎中323(壬辰字本)이다.(이상 규장각 소장)

67) 다만, 壬辰字가 正祖 1년(1777)에 주조된 丁酉字와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丁酉字로 인쇄되거나 양자가 혼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68) 실사한 奎中323의 조사 결과 기준.

<표 7> 壬辰字本の 소장현황

연번	소장처	관리번호	권책수	印記	조사방법
1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31-37	10卷 6冊		影(온라인원문)
2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31-37-2	10卷 6冊		影(온라인원문)
3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323	10卷 6冊	帝室圖書之章	實
4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324	10卷 6冊	帝室圖書之章	목록
5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325	10卷 6冊	帝室圖書之章	목록
6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1073	10卷 6冊		목록
7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1074	10卷 6冊		목록
8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1075	10卷 6冊		목록
9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1076	10卷 6冊		목록
10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1077	10卷 6冊		목록
11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1078	10卷 6冊		목록
12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1079	10卷 6冊		목록
13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1080	10卷 6冊		목록
14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1081	10卷 6冊		목록
15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1082	10卷 6冊		목록
16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1083	10卷 6冊		목록
17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1084	10卷 6冊		목록
18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1085	10卷 6冊	廂庫	목록
19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1086	10卷 6冊		목록
20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1087	10卷 6冊		목록
21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1088	10卷 6冊		목록
22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1089	10卷 6冊		목록
23	연세대학교 도서관	고서(유당) 354.52 오궁 정	10卷 6冊		實
24	연세대학교 도서관	고서(유당) 354.52 오궁 정=2	5冊(零本 ; 存本: 卷2-10)		實
25	연세대학교 도서관	고서(해관) 354.52 오궁 정	10卷 6冊		實
2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332	10卷 4冊		影(MF)

壬辰字本の 세부 소장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에 한古朝31-37(10卷 6冊), 한古朝 31-37-2(10卷 6冊)의 2건이 소장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奎中323, 奎中324, 奎中325, 奎中 1073, 奎中1074, 奎中1075, 奎中1076, 奎中1077, 奎中1078, 奎中1079, 奎中1080, 奎中1081, 奎中 1082, 奎中1083, 奎中1084, 奎中1085, 奎中1086, 奎中087, 奎中1088, 奎中1089(이상 모두 10卷 6冊)의 20건이 소장되어 있다. 이 중 奎中323, 奎中324, 奎中325에는 帝室圖書之章, 奎中1085에는 廂庫의 장서인이 찍혀있다. 연세대학교에 고서(유당) 354.52 오궁 정(10卷 6冊), 고서(유당) 354.52 오궁 정=2(零本 5冊), 고서(해관) 354.52 오궁 정(10卷 6冊)의 3건이 소장되어 있다. 고서(해관) 354.52 오궁 정은 表紙에 冊次를 禮·樂·射·御·書·數의 六禮로 표시하고 있어 全6冊임을 알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K2-332(10卷 4冊)의 1건이 소장되어 있다. 이는 本冊을 인쇄하기 전에 여러 수정사항을 표시한 校正刷本이다.⁶⁹⁾

3.2.4 朝鮮 後期 木板本

이 판본은 木板本으로서 본문내용에 표점을 함께 표시하여 간인한 것이다. 卷首에는 英祖 11년에 徐命均이 쓴 것을 模刻하여 인쇄한 明 憲宗 御製序文이 동일한 書體로 실려 있으나 原刊本이 아닌 翻刻하여 새로 간인한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英祖代 이후의 판본으로 생각되지만 內賜記나 「實錄」, 「承政院日記」 등에서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아 간인연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奎中4118에 宣賜之記의 內賜印이 있어 간인주체가 왕실인 것은 확실하다. 英祖의 後序는 무슨 이유인지 함께 翻刻하여 편입하지 않았다.

이 판본의 卷首題와 版心題는 모두 ‘貞觀政要’이다. 형태서지사항으로 광곽은 四周雙邊, 半葉 26.2×17.9cm, 10행 20자,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이다.⁷⁰⁾ 기관별 소장현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朝鮮 後期 木板本の 소장현황

연번	소장처	관리번호	권책수	印記	조사방법
1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4117	10卷 6冊		實
2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中4118	10卷 4冊	宣賜之記	목록, 해제

이 朝鮮 後期 木板本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奎中4117(10卷 6冊), 奎中4118(10卷 4冊)의 2건이 소장되어 있다. 奎中4118은 零本이 아닌 4冊 完帙本이다.⁷¹⁾ 奎中4117은 상술한 奎中1817의 경우와 같이 권두의 藏書印이 찍혀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도려내져 있다.

4. 結 論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와 조선의 「貞觀政要」의 편찬 및 간행과 관련한 사료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였다. 특히, 기왕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承政院日記」의 내용을 제시하여 英祖代 「貞觀政要」의 편찬 및 간행에 대한 상세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英祖는 역대 군왕 중에서도 「貞觀政要」의 講讀을 각별히 중시하였고 직접 後序를 지어 내리기도 하였다. 처음 英祖代 「貞觀政要」가 간행되었을 때는 明 憲宗의 序文만이 戊申字로 간인되어 편입되었을 뿐 英祖의 後序는 들어있지 않았다. 英祖 10년 12월에 英祖가 後序를 짓고 尹淳과 상의하여 그

69) 상세한 내용은 황천오(1977), 김소희(2015) 참조.

70) 실사한 奎中4117의 조사 결과 기준.

71) 소장기관 방문 조사시 담당직원으로부터 4冊 零本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목록과 해제의 내용을 참조하면 10卷 完帙의 4冊本이다.

내용을 최종적으로 수정한 후 明 憲宗 序文과 함께 중국본 「洪武正韻」의 字體로 大臣 徐命均에게 글씨를 쓰게 하고 그것을 그대로 목판에 模刻하여 편입시키도록 하였다. 이 두 序文의 편입은 다음 해인 英祖 11년 2월 13일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국내외에 현존하는 고려 및 조선본 「貞觀政要」의 판본을 전수적으로 조사하고 목록화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관련 기록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현존본의 편찬 및 간행과정과 간행시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존하는 「貞觀政要」의 판본을 高麗 木板本, 世祖代 乙亥字本 「貞觀政要註解」 卷5, 肅宗代 戊申字本, 英祖代 戊申字本(A, B), 英祖 말기 또는 正祖 재위 이후의 壬辰字本, 朝鮮 後期 木板本の 총 6개로 분류하였다. 高麗 木板本の 경우 戈直本과의 내용, 편목 비교를 통해 양자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힌 후, 戈直이 주석에서 언급한 舊本에 대한 수정 내용을 참조하여 이 판본이 戈直本 편찬 이전에 제작된 舊本에 가깝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貞觀政要註解」 卷5 또한 같은 방법으로 비교하였을 때 戈直이 언급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여 이 역시 舊本 계통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舊本에 해당하는 이 두 판본은 戈直本이 나온 이후 대부분 소실된, 吳兢 편집의 原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肅宗代의 內賜記를 가지고 있는 판본을 확인함으로써 동일 판본을 모두 肅宗代 판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英祖代 戊申字本 A 및 戊申字本 B가 「承政院日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간행 관련 내용과 일치하는 판본임을 밝혔다. 肅宗代와 英祖代 판본의 정확한 실체 파악은 기존 연구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바로잡았다는 성과가 있다.

본 연구는 「貞觀政要」의 간행 관련 기록을 보다 상세히 제시하고 각 판본에 대한 校勘과 형태서지적 분석을 통하여 「貞觀政要」 현존본 간의 관계와 각각의 간행 연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 및 일본 간행의 「貞觀政要」에 대해서는 미처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생각된다. 「貞觀政要」는 오랜 기간 동아시아 전 지역에 걸쳐 널리 읽혔던 서적인 만큼 한중일 「貞觀政要」의 편찬과 간행에 대한 향후의 연구를 통하여 동아시아 帝王學 文獻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高麗史」
- 「高麗史節要」
- 「白湖全書」
- 「承政院日記」
- 「朝鮮王朝實錄」

- 「貞觀政要」(高麗 木板本, 영인) 고려대 소장본 만송 貴 343: 卷8-10(零本)
「貞觀政要」(高麗 木板本, 영인) 연세대 소장본 고서(귀) 681: 卷1-9(零本)
「貞觀政要註解」 卷5(영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貴0237-4: 卷5(零本)
「貞觀政要」(肅宗代 戊申字本, 실사) 고려대 소장본 만송 B7 A127: 卷1-10(完本)
「貞觀政要」(肅宗代 戊申字本, 영인)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古 5130-3: 卷1-10(完本)
「貞觀政要」(肅宗代 戊申字本, 실사)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海士 한 412: 卷5-10(零本)
「貞觀政要」(肅宗代 戊申字本, 영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B6C 13: 卷2-10(零本)
「貞觀政要」(英祖代 戊申字本 A, 실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일산古602-17: 卷1-10(完本)
「貞觀政要」(英祖代 戊申字本 A, 영인)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奎中1817: 卷1-10(完本)
「貞觀政要」(英祖代 戊申字本 B, 영인)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奎中1815: 卷1-10(完本)
「貞觀政要」(英祖代 戊申字本 B, 영인) 버클리대학교 소장 소장본 18.48: 卷1-10(完本)
「貞觀政要」(壬辰字本, 영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한古朝31-37: 卷1-10(完本)
「貞觀政要」(壬辰字本, 영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한古朝31-37-2: 卷1-10(完本)
「貞觀政要」(壬辰字本, 실사) 서울대 규장각 소장 奎中323: 卷1-10(完本)
「貞觀政要」(壬辰字本, 실사) 연세대 소장 고서(유당) 354.52 오궁 정: 卷1-10(完本)
「貞觀政要」(壬辰字本, 실사) 연세대 소장 고서(유당) 354.52 오궁 정=2: 卷1-10(完本)
「貞觀政要」(壬辰字本, 실사) 연세대 소장 고서(해관) 354.52 오궁 정: 卷1-10(完本)
「貞觀政要」(壬辰字本, 영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332: 卷1-10(完本)
「貞觀政要」(朝鮮 後期 木板本, 실사) 서울대 규장각 소장 奎中4117: 卷1-10(完本)

2. 연구논저

[단행본]

- 이충구 외 譯註. 「(譯主) 貞觀政要集論」.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4.
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논문]

- 구순옥, 신창호. “帝王學 교본 편찬의 역사적 고찰 - 「貞觀政要」와 「大學衍義」를 중심으로.” 「한국 교육사학」 38집(2016. 9). 1-24.
김소희. “조선 후기 금속활자본 교정사례 연구 - 壬辰字 校正刷本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61집 (2015. 3). 101-123.
엄태용, 신승운. “「國朝寶鑑」의 編纂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77집(2019. 3). 287-322.
윤대수. “당태종의 통치술: 정관정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임기영. “乙亥字版 「貞觀政要註解」 권5의 의의와 가치.” 「서지학연구」 75집(2018. 9). 5-44.

황천오. “貞觀政要.” 『國學資料』 25집(1977). 1-7.

3. 웹 자료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한국고전번역DB (<http://db.itkc.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 (<http://lib.aks.ac.kr>)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eon, Hye bong. 2006. *Korean bibliography*. Seoul: Minumsa.

Eom, Tae Yong & Shin, Seung-Woon. 2019. “Study on Compilation of Gukjobogam.”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7: 287-322.

Hwang, Cheono. 1977. “Jeongkwanjeongyo(貞觀政要).” *Guk Hakjaryo(國學資料)*, 25: 1-7.

Kim, So Hee. 2015. “A Case Study on the Proofreading of Old Books Printed with Metal Type of the Late Joseon Period - A Case of the Proofread Version of the Letter Type of Yimjin Year.”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1: 101-123.

Ku, Soonock & Shin Changho. 2016. “A Historical Analysis of the Publication of Je-wang-hak (帝王學) Textbooks: Case Studies on Jung-kwan-jung-yo(貞觀政要) and Dae-hak-yun-eui (大學衍義).”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education*, 38: 1-24.

Lee, Chunggu et al (Trans.). 2014. *JeongkwanjeongyoJipron*. Seoul: Institute of Traditional Culture.

Lim, Keeyoung. 2018.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the Junggwanjungyojoohae Vol. 5 Printed in Ulhae Metal Type.”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5: 5-44.

Yoon, Dae-Soo. 2002. *A study on the Taizong's ruling tactics of the Tang Dynasty - Focused on Zhenguanzhengyao*.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부록 1] 高麗 木板本과 戈直本の 내용 차이

연번	高麗 木板本		戈直本(奎中 1817)
	위치(卷-張-行)	내용	
1	卷1-7a-2	得爲 <u>治</u> 之意…弓猶失之 <u>何</u> 況	得爲 <u>理</u> 之意…弓猶失之 <u>而</u> 況
2	卷1-7a-3	於 <u>治</u> 乎	於 <u>理</u> 乎
3	卷1-7a-6	<u>上</u> 謂	<u>太宗</u> 謂
4	卷1-7b-3	知非政事 <u>不正</u> □□□行	知非政事 <u>遂</u> 卽施行
5	卷1-7b-4	頓爲萬人之大弊	頓爲萬人之大弊
6	卷1-8b-6	<u>上</u> 謂侍臣曰	<u>太宗</u> 謂侍臣曰
7	卷1-8b-7	如有不 <u>穩</u>	如有不 <u>穩</u> 便
8	卷1-9a-3	疑有不 <u>穩</u>	疑有不 <u>穩</u> 便
9	卷1-9a-7	或至日 <u>側至今</u> 宿衛之人	或至日 <u>晨</u> 五品已上引坐論事宿衛之士
10	卷1-9a-8	<u>上</u> 曰	<u>太宗</u> 曰
11	卷1-9b-4	雖勞神苦形	雖 <u>則</u> 勞神苦形
12	卷1-9b-5	朝臣知其意	朝臣 <u>既</u> 知其意
13	卷1-9b-6	唯承 <u>受</u> 而已…以天下之 <u>至</u> 廣	唯 <u>卽</u> 承順而已…以天下之廣 <u>四海</u> 之衆
14	卷1-9b-7	端 <u>萬</u> 緒 <u>雖</u> 合變通	端 <u>萬</u> 緒 <u>須</u> 合變通
15	卷1-10a-1	獨斷一人之慮	獨斷一人之慮 <u>也</u>
16	卷1-17b-1	<u>又</u> 山東村落	<u>入</u> 山東村落
17	卷2-1a-8	<u>獨</u> 杖策謁於軍門	杖策謁於軍門
18	卷2-4b-2	叅預 <u>政事</u>	叅預 <u>朝政</u>
19	卷2-4b-5	太宗宴近臣	太宗 <u>幸</u> 九成宮宴近臣
20	卷2-5a-2	我所以重之七年 <u>遷</u> 侍中累封鄭	我所以重之 <u>也</u> 微再拜曰陛下導臣使言臣所以敢言若陛下不受臣言臣亦何敢犯龍鱗觸忌諱也太宗大悅各賜錢十五萬七年代王珪爲侍中累封鄭
21	卷2-5a-3	以疾請 <u>解職</u> 太宗曰公獨不見金	以疾 <u>乞</u> 辭所職請爲散官太宗曰朕拔卿於隸虜之中任卿以樞要之職見朕之非未嘗不諫公獨不見金
22	卷2-5a-8	十二年 <u>帝</u> 謂侍臣曰貞觀 <u>已</u> 前從我 <u>定平</u>	十二年 <u>太宗</u> 以 <u>懿</u> 皇孫詔宴公卿帝極歡謂侍臣曰貞觀 <u>以前</u> 從我 <u>平定</u>
23	卷2-5b-2	成 <u>吾</u> 今	成 <u>我</u> 今
24	卷2-5b-4.5	親解佩刀以賜二人十/七年 <u>拜</u> 微太子太師知門下事如故	親解佩刀以賜二人庶人承乾在春宮不修德業；魏王泰寵愛日隆內外庶寮咸有疑議太宗聞而惡之謂侍臣曰：「 <u>當</u> 今朝臣忠謫無如魏微我遣傳皇太子用絕天下之望十七年 <u>遂</u> 授太子太師知門下事如故微自陳有疾太宗謂曰太子宗社之本須有師傅故選中正以爲輔弼知公疹病可臥護之微乃就職
25	卷2-6a-3	夫以 <u>鏡</u> 爲鏡	夫以 <u>銅</u> 爲鏡
26	卷2-6a-6	詔曰	<u>乃</u> 詔曰
27	卷2-6a-7	顯 <u>余</u> 過	顯 <u>予</u> 過
28	卷2-13b-6	則便思之 <u>八</u> 年	則便思之 <u>十八</u> 年
29	卷2-14a-2	量人物直道而言多稱朕意實藉此人	量人物直道而言 <u>朕比任使之</u> 多稱朕意 <u>既</u> 寫忠誠親附於朕實藉此人
30	卷2-14a-3	共康時政	共康時政 <u>也</u>
31	卷2-14a-8	<u>侍臣</u>	<u>公卿</u>
32	卷2-14b-3	至 <u>如</u> 隋煬帝暴虐	至 <u>於</u> 隋煬帝暴虐
33	卷2-15a-4	故古 <u>之</u> 聖主	故古 <u>者</u> 聖主
34	卷2-15a-5	則繼以死	則 <u>相</u> 繼以死
35	卷2-15b-5	昔 <u>微</u> 子佯狂自	昔 <u>箕</u> 子佯狂自
36	卷2-16a-3	則與 <u>微</u> 子佯狂而去	則與 <u>箕</u> 子佯狂而去

연번	高麗 木板本		戈直本(奎中 1817)
	위치(卷-張-行)	내용	
37	卷2-16a-5.6	趙王倫及舉兵廢后	及趙王倫舉兵廢后
38	卷2-16a-7	當時不被納用	當不被納用
39	卷2-16b-2	古人云	古人有云
40	卷2-16b-4	直不足成節…王臣之節固既	直不能成節…王臣之節固已
41	卷2-17a	貞觀三年 기사 없음	貞觀三年 기사 있음
42	卷2-17b-3	亦須受人諫語	公等亦須受人諫語
43	卷2-17b-4.5	安能以諫人	安能諫人
44	卷2-17b-6	求諫第四의 貞觀六年, 太常卿 韋挺 기사 2건 없음 (24b, 25a에 배치)	기사 2건 있음. 각 한 章으로 구성
45	卷2-17b-6	上謂	太宗謂
46	卷2-17b-7	則內自省焉	則自內省
47	卷2-17b-8	但思匡諫 … 下無怨滯(小註雙行)	但思正人匡諫…下無怨滯(本字)
48	卷2-18a-1	比見人來奏事者	又比見人來奏事者
49	卷2-18a-7	則以謂之謗己	則以爲謗己
50	卷2-24b,25a	求諫第四 貞觀六年 기사, 太常卿 韋挺 기사 배치. 2개 기사가 한 章으로 구성돼 있음	求諫第四에 배치
51	卷2-24b-4	得所上意見	所上意見
52	卷2-25a-1	若能全此節	若能克全此節
53	卷2-25a-2	勉勵終此	勉勵終始
54	卷2-25a-4	李大亮 貞觀中 爲涼州都督	貞觀三年 李大亮 爲涼州都督
55	卷2-25a-8	若此陞	若是陞
56	卷2-26a-7	盡君臣之義宜加尋閱	盡君臣之義今以賜卿宜加尋閱
57	卷2-26b-2	帝時上書云可爲痛哭者三可爲長嘆息者五	帝上書云云可爲痛哭者一可爲長嘆息者六
58	卷2-26b-5	令賜德衆物	令賜德衆帛
59	卷2-26b-7	貞觀中	貞觀十五年
60	卷2-27a-2	不專	不爲專
61	卷2-27a-5	土安寧則…昔漢文有	國安寧則…昔漢文帝有
62	卷2-27a-7.8	吾獨乘千里馬者將以安之乎…費而返之	吾獨乘千里馬將安之乎…所費而返之
63	卷2-27b-8	太子右庶子高季輔上疏言	太子右庶子高季輔上疏
64	卷3-4b-8	然則首雖尊極	然則首雖尊高
65	卷3-6a-7	反服之有	反服之禮之有
66	卷3-7a-7	薄厚然則爲人主者	厚薄然則爲人主者
67	卷3-7b-3	信之未篤信之未篤則人或自疑	信之未篤則人或自疑
68	卷3-8a-4	此則君開一元	此則君開一源
69	卷3-12b	戈直本の 食鄣第二十六 貞觀十六年 기사를 君臣鑒戒第六에 貞觀十九年으로 배치	食鄣第二十六 貞觀十六年 기사로 배치
70	卷3-12b-2	貞觀十九年	貞觀十六年
71	卷3-12b-3	復巢於木杪	復巢於木末
72	卷3-12b-4	魚藏於泉…復窟穴於泥下然爲人	魚藏於水…復穴於窟下然而爲人
73	卷3-12b-5	今大臣受委任居高位	今人臣受任居高位
74	卷3-12b-6	皆須履忠信	當須履忠正
75	卷3-12b-7	無咎悔長守富貴矣陷其刑者	無災害長守富貴矣古人云禍福無門惟人所召然陷其身者
76	卷3-13a-1	與魚鳥何異哉卿等宜記此語	與夫魚鳥何以異哉卿等宜思此語
77	卷3-13a-2	用爲鑒誠	爲鑒誠
78	卷3-13a-5	唯在於	唯在於養
79	卷3-15a-1	上謂右僕射封德彝	太宗謂右僕射封德彝
80	卷3-15a-5	今所未有奇才異能上曰	今未見有奇才異能太宗曰

연번	高麗 木板本		戈直本(奎中 1817)
	위치(卷-張-行)	내용	
81	卷3-15a-6	使人如器不借才於異代皆取士於當時	使人如器皆取士於當時不借才於異代
82	卷3-16a-2	才士乃將依漢時法令	才太宗乃將依漢時法令
83	卷3-16a-3	等將行世封其事遂止	等將行世封事遂止
84	卷3-16a-4	上謂魏徵曰	太宗謂魏徵曰
85	卷3-17a-1	在刺史	惟在刺史
86	卷3-17a-2	若每州得良吏	若每州得良刺史
87	卷3-17a-7	朝廷必不可獨重內	朝廷必不可獨重內臣
88	卷3-18a-8	所以郎中與奪	所以郎中予奪
89	卷3-24b-7	書奏太宗甚嘉納之	書奏甚嘉納之
90	卷3-25a-4	改授韓州刺史	改授洛州刺史
91	卷3-25a-8	食實封三千	食邑實封一千
92	卷3-32b-1	言象所絕	言象所紀
93	卷3-32b-7	陶唐之求諫也	帝堯之求諫也
94	卷3-33a-8	文命矜其卽序	文命矜其卽敘
95	卷3-33b-3	心切憂勞跡	心切憂勞志
96	卷3-34a-4	此由習之永久…請待臻成	此由習之久…請待斷難成
97	卷3-34b-4	誠愛之重欲其胤裔承守	誠愛之重之欲其緒裔承守
98	卷3-34b-5	以唐虞之父	以堯舜之父
99	卷3-34b-6	況下此已還	況下此以還
100	卷3-35a-3	是則向所謂愛之	然則向之所謂愛之
101	卷3-35a-4	乃所以傷之也	乃適所以傷之也
102	卷3-35a-5	隨器授官使其人得	隨器方授則翰翮非強亦可以獲免尤累昔漢光武不任功臣以吏事所以終全其世者良由得其術也願陛下深思其宜使夫得
103	卷3-35a-6	而子孫終其福祿也	而子孫終其福祿也太宗並嘉納其言於是竟罷子弟及功臣世襲刺史
104	卷3-35a-6,7,8	會長孫無忌等皆不願之國且言臣披荊棘事陛下今海內寧一奈何棄之外州乎(본문에 없는 내용)	通鑑按貞觀五年…會長孫無忌等皆不願…且言臣等披荊棘事陛下今海內寧一奈何棄之外州與遷徙何異(戈直註의 내용)
105	卷3-35b-1,2,3	上曰割地以封功臣古今通義朕欲令公子孫世爲有土之君而公薄之朕豈以茅土邪乃詔停止(본문에 없는 내용)	上曰割地以封功臣古今通義意欲公之後嗣輔朕子孫共傳永久而公等乃復發言怨望朕豈強公等以茅土耶詔停止封刺史(戈直註의 내용)
106	卷4-6a-1	湯學成子伯	湯學成子伯
107	卷4-6a-2	前代聖人	前代聖王
108	卷4-12a-1	貞觀七年上謂	貞觀七年太宗謂
109	卷4-20a-3	違之則因念作忒	違之則罔念作忒
110	卷4-20a-7	故能釋增冰於瀚海	故能釋層冰於瀚海
111	卷4-20b-2	機暗宏遠	機悟宏遠
112	卷4-20b-6	自大道玄革	自大道云革
113	卷4-21a-1	謂亦丹朱以商均	謂亦丹朱與商均
114	卷4-21a-4	故先之以禮樂	乃先之以禮樂
115	卷4-22a-4	固明禹之遞作	固明禹之遞作
116	卷4-22a-8	防衰年之絕	防衰年之絕議
117	卷4-23b-2	寔御床之可惜	實御床之可惜
118	卷4-23b-7	重經術而爲寶	重經術以爲寶
119	卷4-24a-1	先得人而爲美陶唐	先得人而爲盛帝堯
120	卷4-24a-6	諂諛競進以求媚	諂諛競進以求媚
121	卷4-24b-3	之理…感陰陽之和	不理…乖陰陽之和

연번	高麗 木板本		戈直本(奎中 1817)
	위치(卷-張-行)	내용	
122	卷4-24b-5	是故帝 唐 畫像	是故帝 堯 畫像
123	卷4-25a-6	亦亡 家 而喪國	亦亡 身 而喪國
124	卷4-25a-7	伊尹以 酣室 而作戒	伊尹以 酣歌 而作戒
125	卷4-25a-8	實好 求 於君子	實好 述 於君子
126	卷5-5a-2	臣昔受命太上	臣 等 昔受命太上
127	卷5-5b-1	喪君 舊君	喪君 有君
128	卷5-5b-3	太宗義 之 而許	太宗義而許
129	卷5-5b-6	無之屈突通爲隋將	無之公等知隋朝誰爲忠貞王珪曰臣聞太常丞元善達在京留守見群賊縱橫遂轉驛遠詣江都諫煬帝令還京師既不受其言後更涕泣極諫煬帝怒乃遂使追兵身死瘴癘之地有虎賁郎中獨孤盛在江都宿衛宇文化及起逆盛惟一身抗拒而死太宗曰屈突通爲隋將
130	卷5-5b-8	朕遣其家人招慰…又遣子	朕遣其家人往招慰…又遣其子
131	卷5-6a-2	汝舊於我爲父子今 卽 於	汝舊於我家爲父子今 則 於
132	卷5-6a-3	我爲 讎敵	我家爲仇讎
133	卷5-6a-7	忠節足可嘉尙	太上皇授其官每托疾固辭此之忠節足可嘉尙因敕所司採訪大業中直諫被誅者子孫聞奏
134	卷5-6b-4	有此選	有此選 授
135	卷5-6b-5	無容/目觀覆車	豈容目觀覆車
136	卷5-7a	忠義第十四의 貞觀八年, 貞觀七年 기사 없음	忠義第十四의 貞觀八年, 貞觀七年 기사 있음
137	卷5-7a-1	蕭瑀 貞觀中 爲尙書左僕射	貞觀九年蕭瑀爲尙書左僕射
138	卷5-7a-6	瑀謝曰	瑀拜謝曰
139	卷5-7a-7	臣/特蒙許臣以忠 諫	臣特蒙 誠訓 許臣以忠 諫
140	卷5-7b-3	可謂雖死 如 生	可謂雖死 猶 生
141	卷5-7b-5	焉敢 加 /不勸勳名節	焉敢不勸勳名節
142	卷5-7b-7	貞觀十一年 上 謂侍臣曰	貞觀十一年太宗謂侍臣曰
143	卷5-8a-4	襄子執而獲/之曰子昔事範中行氏乎	襄子執而獲之謂之曰子昔不事範中行氏乎
144	卷5-8b-1	亦何謂/無人	亦何謂無人焉
145	卷5-8b-2	太宗以貞觀十三年幸蒲州詔曰	貞觀十二年太宗幸蒲州因詔曰
146	卷5-8b-3	鷹擊郎將 姚 君素	鷹擊郎將 堯 君素
147	卷5-8b-4	雖桀犬吠 唐	雖桀犬吠 堯
148	卷5-8b-8	貞觀 中	貞觀十二年
149	卷5-9a-2	文本言…唯尙書僕射	文本奏言…莫有留者唯尙書僕射
150	卷5-9a-3	王世充將受禪	王世充將受 隋 禪
151	卷5-9a-6	寔 繼先風	實繼先風
152	卷5-9a-7	兼令侍讀	尋授弘文館學士
153	卷5-9a-8	忠義第十四 貞觀十五年 기사 없음	忠義第十四 貞觀十五年 기사 있음
154	卷5-9a-8	貞觀中 岑文本 기사(戈直本の 貞觀十二年 기사) 뒤 에 貞觀十九年 기사가 章 구분 없이 바로 이어짐	貞觀十二年 岑文本 기사와 貞觀十九年 기사가 별도 章으로 구분
155	卷5-9a-8	詔令 權 延壽	詔令 縛 延壽
156	卷5-9b-2	帝怒	帝怒 甚
157	卷5-9b-3	而攻其城	以攻其城
158	卷5-9b-4	嘉安市城主堅守 賊 節	嘉安市城主堅守 臣 節
159	卷5-9b-5	以勸事君者	以勸勵事君者
160	卷5-10a-5	世南抱持/ 涕 泣	世南抱持 號 泣
161	卷5-11b-5	共怨前宮及齊府左	並怨前宮及齊府左
162	卷5-11b-7	而 唐虞 廢之	而 堯舜 廢之
163	卷5-11b-8	管叔兄弟也	管叔 蔡叔 兄弟也

연번	高麗 木板本		戈直本(奎中 1817)
	위치(卷-張-行)	내용	
164	卷5-12a-1	天下爲心無私於物	天下爲公無私於物
165	卷5-12a-5	蓋爲求安百姓	蓋爲求安百姓也
166	卷5-12a-6	凡一面尙自相親	凡一面尙且相親
167	卷5-12a-8	而直言其怨嗟	而直言其嗟怨
168	卷5-16b	論公平第十六 貞觀初, 貞觀十一年 기사 2건 없음	論公平第十六 貞觀初, 貞觀十一年 기사 2건 있음
169	卷5-16b-8	有上書請去佞者	有上書請去佞臣者
170	卷5-17a-4	帝謂封德彝曰	太宗謂封德彝曰
171	卷5-20b-2	武王代之	武王奪之
172	卷6-1b-2	共衆所有故也	而衆所共有故也
173	卷6-2a-3	使心不亂	使民心不亂
174	卷6-2a-6	自王公已下第宅車服婚娶	自王公已下第宅車服婚嫁
175	卷6-2b-8	竟不許	固請至于再三竟不許
176	卷6-3a-1	崇飾宮宇遊賞池臺	崇飾宮宇遊賞池臺
177	卷6-3a-8	陛下本憐萬姓	陛下本憐百姓
178	卷6-3b-4	非此書籍所傳	此非書籍所傳
179	卷6-4a-3	將爲劉后起鸞儀殿	聽將爲劉后起鸞儀殿
180	卷6-4b	論儉約第十八 貞觀十一年, 岑文本, 戴胄, 溫彥博, 魏徵 기사 5건 없음	論儉約第十八 貞觀十一年, 岑文本, 戴胄, 溫彥博, 魏徵 기사 5건 있음
181	卷6-4b-8	朕每出一言	朕每思出一言
182	卷6-5a-7	堯舜所以太平	唐虞所以太平
183	卷6-5b-5	猶以爲少	猶病以爲少
184	卷6-6a-5	誠如卿所說	誠如卿言
185	卷6-6a-8	江淮及嶺南北	遂領江淮及嶺南北
186	卷6-6b-1	專/制八方	專/制一方
187	卷6-6b-7	貞觀初上謂侍臣曰	貞觀初太宗謂侍臣曰
188	卷6-7a-3	息人亦得各	兼以息人亦各得
189	卷6-7b-1	朕甚惡之焉	朕甚惡焉
190	卷6-7b-6	情發於衷	情發於中
191	卷6-7b-7	遂泣之	遂哭之
192	卷6-8b-4.5	故唐虞率天下以仁	故堯舜率天下以仁
193	卷6-9a-6	爲萬紐於謹所圍	爲萬紐於謹所圍
194	卷6-10b-1	且居天下者	且君天下者
195	卷6-10b	慎所好第二十一 貞觀七年 기사 1건 없음	慎所好第二十一 貞觀七年 기사 있음
196	卷6-10b-5	於百姓有利益不	於百姓有利益否
197	卷6-10b-6	所以不能多言	所以不敢多言
198	卷6-11a-3	上謂侍臣曰	太宗謂侍臣曰
199	卷6-11a-7	不可出言有失	不可出言有所乖失
200	卷6-11a-8	我常/以此爲誠	我常以此爲戒
201	卷6-13a-1	魏文宏才	魏文宏材
202	卷6-13a-3	簡/彼細圖澹焉怡且	簡彼細圖澹焉怡悅
203	卷6-13a-4	皇恩斯畢手詔	皇恩斯畢太宗手詔
204	卷6-13a-5	答曰比有談論	答曰非慮無以臨下非言無以述慮比有談論
205	卷6-16a-7	陛下須使常保安全	須使定分常保安全
206	卷6-17b	論奢縱第二十五의 첫 기사로 辨興亡第三十四의 貞觀二年 기사가 삽입	論奢縱第二十五는 貞觀十一年 기사가 첫 번째이며 총 4건임
207	卷6-22a-3	固非謬言秦惠王欲	固非謬言也昔秦惠王欲
208	卷6-22a	食鄴第二十六 貞觀四年, 貞觀六年, 貞觀十年, 貞觀十六年 기사 없음	食鄴第二十六 貞觀二年 기사 다음에 貞觀四年, 貞觀六年, 貞觀十年, 貞觀十六年 기사 배치

연번	高麗 木板本		戈直本(奎中 1817)
	위치(卷-張-行)	내용	
209	卷8-1b-1	時爲本人□□□□	時爲本夫不失時者
210	卷8-2a-2	剋其勵耳	剋自勵耳
211	卷8-2a-3	其可得也	其可得乎
212	卷8-2b-6	不顧禮義	不顧理義
213	卷8-3a-2	計斗直兩錢	計斗直三錢
214	卷8-3a-4	既屬豐稔若斯唯欲躬	既屬豐稔若斯朕爲億兆人父母唯欲躬
215	卷8-3a-6	今省徭賦…比屋之人恣其耕稼	今省徭賦…使比屋之人恣其耕稼
216	卷8-3b-7	諫議大夫王珪曰	諫議大夫王珪進曰
217	卷8-4a-2	卽其職也自今	卽其職也自今以後
218	卷8-4a-3	宰相及尙書九卿議之	中書門下四品已上及尙書九卿議之
219	卷8-4a-8	自今告主者	自今奴告主者
220	卷8-4b-8	公等食君之祿	公等食人之祿
221	卷8-5a-4	朕當時正怒	朕當時盛怒
222	卷8-5a-7	自蘊古始也蘊古	自蘊古始也又曰守文定罪或恐有冤自今以後門下省覆有據法令死而情可矜者宜錄奏聞蘊古
223	卷8-5b-3	任土貢其所求	任土貢其所有
224	卷8-5b-4	是故兢懼之心日弛	是故恐懼之心日弛
225	卷8-5b-5	固以聖人受命	故以聖人受命
226	卷8-5b-6	因心於人至明無偏照	因心於民大明無偏照
227	卷8-6a-6	羅八品於前	羅八珍於前
228	卷8-7a-3	輕重自具…不示物以情	輕重自見…不示物以形
229	卷8-7a-4.5	妍蚩自生…勿沒沒而闇	妍蚩自露…勿汶汶而闇
230	卷8-7a-8	隨深淺而皆盈	隨淺深而皆盈
231	卷8-7b-2	萬物無爲而受成	萬物無爲而受成
232	卷8-7b-3	民懼其威	人懼其威
233	卷8-7b-5	窮神盡聖使文以心	窮神盡性使人以心
234	卷8-7b-6	苞括治體抑揚詞令	苞括理體抑揚辭令
235	卷8-8a-1	賜帛三百段	賜帛三百段仍授以大理寺丞
236	卷8-8a-4	自今在京諸司	自今後在京諸司
237	卷8-8b-1	貞觀中 (이전 기사에서 줄바꿈 없이 바로 이어짐)	貞觀九年
238	卷8-8b-5	然治國守法	然理國守法
239	卷8-8b-4	上多疑則百姓惑	上人疑則百姓惑
240	卷8-9a-5	夫上易事下易知	夫上易事則下易知
241	卷8-9b-3	帝王之爲畫	帝王之所以與天下爲畫
242	卷8-9b-4	不以親疏貴賤而輕重者也	不以貴賤親疏而輕重者也
243	卷8-9b-5	輕重由乎喜	或輕重由乎喜
244	卷8-10b-2	漢朝之刑已弊	漢朝之刑以弊
245	卷8-11a-2,3	實恐驕奢之攸漸且我之所代	實恐驕奢之攸漸是知貴不與驕期而驕自至富不與侈期而侈自來非徒語也且我之所代
246	卷8-11a-8	我以貧寡而安寧	我以貧窮而安寧
247	卷8-11b-6	至乎將受戮辱	至於將受戮辱
248	卷8-11b-7	夫鑒形之美惡	夫鑒形之美惡
249	卷8-12a-8	得之貨採賡	得之貨採堯
250	卷8-12b-1	虞之誹謗	舜之誹謗
251	卷8-12b-5	此聖哲之宏規帝王之大業	此聖哲之宏規而帝王之大業
252	卷8-13a-2	治以忘亂存不忘亡	存不忘亡治不忘亂
253	卷8-13a-7	太宗深嘉納用	太宗深嘉而納用

연번	高麗 木板本		戈直本(奎中 1817)
	위치(卷-張-行)	내용	
254	卷8-13b-2	其子丹朱不肖	其子丹朱甚不肖
255	卷8-14a-4	朕問法官刑罰輕重每稱寬於往代	朕常問法官刑罰輕重每稱法網寬於往代
256	卷8-14b-3	古語曰	古語云
257	卷8-15b-2	實不益/道理	實不益道理宜令審細毋使互文
258	卷8-15b-6	慎酒出令	慎乃出令
259	卷8-16a-3	尊體不瘳	今尊體不瘳
260	卷8-16a-5	吾素非爲惡	吾素非爲惡者
261	卷8-16b-7	林邑國以貞觀中貢白鸚鵡性辯惠尤善	貞觀中林邑國貢白鸚鵡性辯慧尤善
262	卷8-17a-1	令還於林藪	令還放於林藪
263	卷8-17b-1	皆/不能自保也	不能自保
264	卷8-18b-1	並還之	並却還之本國
265	卷9-1a-7	自張形勢云	自張聲勢云
266	卷9-4b-1	兵部尙書侯君集以貞觀十四年伐高昌	貞觀十四年兵部尙書侯君集伐高昌
267	卷9-5a-5	與之婚媾	與之爲婚媾
268	卷9-6b-2	卒誅夷	卒並誅夷
269	卷9-6b-7	太宗以貞觀十八年將親征高麗開府儀同	貞觀十九年太宗將親征高麗開府儀同
270	卷9-6b-8	車駕自往遼左	車駕若自往遼左
271	卷9-7a-6	太宗雖不從其議	太宗雖不從其諫
272	卷9-7b-8	帝親爲針	帝親爲針灸
273	卷9-8a-4	上表諫曰	遂上表諫曰
274	卷9-8a-6	無遠不洎自古所不臣者	無遠不暨上古所不臣者
275	卷9-8a-8	爲中國/患	爲中國患害
276	卷9-9a-5	觀風雲氣視景而望書符應若神筭	屈指而候視景而望書符應若神筭
277	卷9-9a-6	擢將於行伍之間	擢將於行伍之中
278	卷9-9a-8	弓貫六鈞加以留情典墳	弓貫六鈞加以留情墳典
279	卷9-9b-3	撫萬民以慈	撫萬姓以慈
280	卷9-9b-5	恩鼓刀於	息鼓刀於
281	卷9-10a-1	今臣心識/昏憤	臣心識昏憤
282	卷9-10a-8	得是喪之理	得有喪之理
283	卷9-12a-1	即臣死且不朽	即臣死骨不朽
284	卷9-12a-2	尙能憂我國家	尙能憂我國家雖諫不從終爲善策
285	卷9-12a-3	議征伐第三十四 貞觀二十二年 기사 없음	議征伐第三十五 貞觀二十二年 기사 있음
286	卷9-12a-5	部落多來歸降者詔議安邊	其部落多來歸降者詔議安邊之策
287	卷9-11b-1	而無忘武備	而不忘武備
288	卷9-11b-2	臣之愚心	臣之愚昧
289	卷9-11b-4	億載之祚隨天地長久	億載之祚與天地長久
290	卷9-11b-6	變咎爲祥	變災爲祥
291	卷9-11b-7	豈可謂天譴之而	豈可謂天譴而
292	卷9-12a-4	太宗謂侍臣曰當今遠夷率/服	太宗謂侍臣曰自古帝王亦不能常化假令內安必有外憂當今遠夷率服
293	卷9-12a-5	賊盜不作	盜賊不作
294	卷9-12a-7	須思其/終始	亦須思其終始
295	卷9-12a-8	始是可貴	始是可貴也
296	卷9-23b-8	之休賜徵黃金十斤	之義乃賜徵黃金十斤

[부록 2] 乙亥字本 「貞觀政要註解」 卷5와 高麗 木板本 卷5의 내용 차이

연번	乙亥字本 「貞觀政要註解」 卷5		高麗 木板本 卷5
	위치(張)	내용	
1	5b	陟 <u>岡</u> 有感…喪君有君	陟 <u>岡</u> 有感…喪君有 <u>舊</u> 君
2	6a	太宗義而許之	太宗義之而許之
3	6a,6b,7a	無之公等知隋朝誰爲忠貞侍臣王珪曰臣聞太常丞元善達在京留守見群賊縱橫遂轉騎遠詣江都諫煬帝令還京師既不受其言後更涕泣極諫煬帝怒乃遠使追兵身死瘴癘之地/有武貴郎將獨孤盛在江都宿衛字文化及起逆盛惟/一身抗拒而死太宗曰屈突通爲隋將	無之屈突通爲隋將
4	7a	聞京師陷…朕遣其家人往招慰遽…遣其子往…我蒙隋家驅使已事兩帝今者…汝舊於我家爲父子今則於我家爲仇讎	聞京城陷…朕遣其家人招慰遽…遣子往…我蒙隋 <u>室</u> 驅使已事兩帝今者…汝舊於我爲父子今 <u>即</u> 於我爲敵
5	7b	追兵擒之太上皇授其官每托疾固辭此之忠節足可嘉尚因勅所司採訪大業中直諫被誅者子孫聞奏貞觀六年…皇明朕有克定之功不可黜退	追兵擒之忠節足可嘉尚貞觀六年…皇明朕有克定功不 <u>宜</u> 黜退
6	8a	今賞公忠謇有此遷授叔達對曰	今賞公忠謇有此遷授叔達對曰
7	9a	數百年後方遇聖君…親降神作此可謂雖死猶…凡百君子焉可不勗勵名節	數百年後方遇聖 <u>明</u> …親降神作可謂雖死 <u>如</u> …凡百君子焉 <u>加</u> 不勗勵名節
8	9b	此人而不可得…而獲之謂之曰	此人 <u>恐</u> 不可得…而獲之曰
9	10a	子昔事範…今爲智伯報/讎何也…亦何謂無人焉…貞觀十三年太宗幸蒲州因詔曰	子昔事範…今 <u>即</u> 爲智伯報讎何也…亦何謂無人… <u>太宗</u> 以貞觀十三年幸蒲州詔曰
10	10b	隋故鷹擊郎將堯君素…雖桀犬吠堯有乖倒戈之志而疾風勁草	隋故鷹擊郎將 <u>姚</u> 君素…雖桀犬吠 <u>唐</u> 有乖倒戈之志疾風勁草
11	11a	復有子孫堪招引否文本奏言隋師入陳百司分散莫有留者…王世充將受隋禪群僚表請勸進	復有子弟堪招引 <u>不</u> 文本言隋師入陳百司奔散…王世充將受禪群僚表請勸進
12	11b	兼令侍讀尋授弘文館學士…詔令高延壽惠眞降…帝怒甚	兼令侍讀…詔令 <u>權</u> 延壽惠眞降…帝怒
13	12a	嘉安市城主堅守臣節	嘉安市城主堅守 <u>賊</u> 節
14	12b	世南抱持號泣…時年十五聞太妃有疾	世南抱持 <u>涕</u> 泣…時年十五 <u>在</u> 州聞太妃有疾
15	14a	而堯舜廢之管叔蔡叔兄弟也	而 <u>唐虞</u> 廢之管叔兄弟也
16	14b	蓋爲求安百姓也…今不問其能不能	蓋爲求安百姓…今不 <u>論</u> 其能不能
17	19b	太宗曰吾已得其人也	太宗曰吾已得其人 <u>矣</u>
18	19b-20a	貞觀初, 貞觀十一年(戈直本에 비해 뒷부분 상당량 누락) 기사 있음	貞觀初, 貞觀十一年 기사 없음
19	28b	項氏以無仁信爲漢祖所奪	項氏以無信爲漢高祖所奪

